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5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 결산편 -



예 천 군

목 차

I.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3
II. 공통공시	7
1. 공통공시 총괄	7
2. 살림규모	9
3. 재정여건	16
4. 채무 및 부채	19
5. 채권	27
6. 행정운영경비	28
7. 복지 및 민간지원	41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	44
9. 재정성과	51
10. 감사 및 평가결과	69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71
III. 특수공시	99
IV. 별지	114
V. 관련법규	139
VI. 용어해설	148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지방재정법 제60조)
 -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2 재정공시 내용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영상황 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등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 재무제표,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영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영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 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2015년 예천군 재정공시(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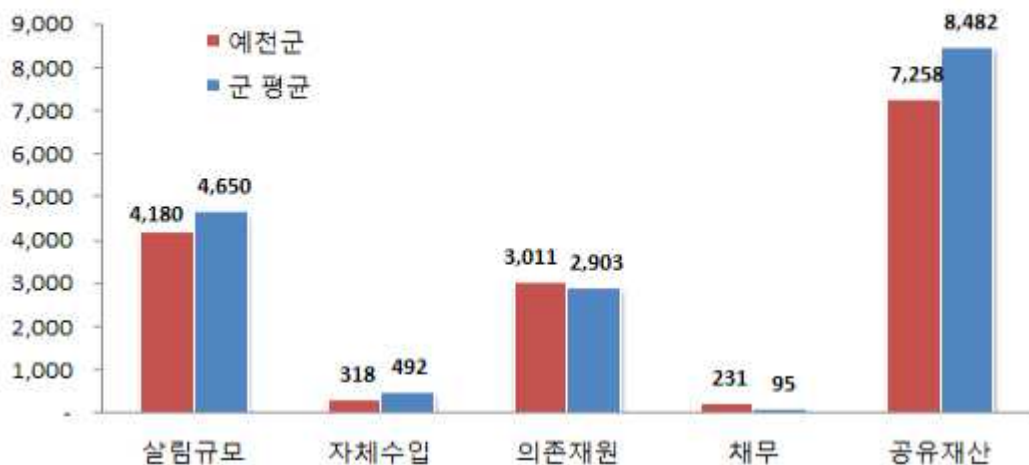
2015. 8.

예천군수 (인)

- ◆ 우리 군의 2014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180억원으로, 전년대비 21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1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7만원입니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011억원 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1억원입니다.
- ◆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23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51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4년도에 2,393건 (981억원)을 취득하고, 599건(10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7,25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군을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 억원)



- ◆ 우리 군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650억원) 보다 47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492억원)보다 175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903억원)보다 108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95억원)보다 136억원 많고, 군민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77천원)보다 335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8,482억원)과 비교하여 1,223억원이 적습니다.

- ◆ 우리 군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82%(전국 평균 11.0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15%(전국 평균 57.60%)입니다.

- ◆ 우리 군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3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 자치단체와 살림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지속적인 교부세 감액 추세로 재정자주도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및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세율 인상 및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 노력으로 우리 예천군의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cg.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예천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재훈
 전화번호 : 054-650-6815
 이 메 일 : ilmare85@korea.kr

II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예천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살림규모	세 입 결 산	4,180	3,965	215	4,650	4,563	88
	세 출 결 산	3,438	3,247	191	3,526	3,538	△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5.82	12.22	△6.4	11.01	18.23	△7.22
	재정자주도[최종]	60.15	65.30	△5.15	57.60	65.46	△7.86
	통합재정수지[최종]	33	26	7	50	52	△2
④ 채무/부채	통 합 부 채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자 체 부 채	311	286	24	308	327	△19
	지방공기업 부채	-	-	-	-	-	-
	출자·출연기관 부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 발 부 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자 체 채 무	231	210	21	95	125	△3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 행 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 시 차 입 금	-	-	-	-	-	-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	-	-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 획 ·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 증 채 무	-	-	-	-	-	-
	채 권 현 황	65	69	△4	66	72	△6
⑤ 채권	채 권 현 황	65	69	△4	66	72	△6
	기관운영 기본경비	28	27	1	24	24	△1
	청 사 관 리 운 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 무 원 인 건 비	443	426	17	414	388	26
	업 무 추 진 비	4	4	△0	3	4	△0
	국 외 여 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의 회 경 비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 춤 형 복 지 비	10	7	2	8	8	0
	연 말 지 출 비 율	286	155	131	165	167	△2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체 납 액	25	25	0	55	55	0
	금 고 협 력 사 업 비 운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예산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경비	사 회 복 지 비	545	475	69	571	507	63	
	지 방 보 조 금 현 황	445	441	4	424	432	△8	
	행 사 축 제 경 비	9	7	1	15	14	0	
⑧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 금 현 황	14	17	△3	124	115	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7,258	6,385	873	8,482	8,067	415	
	물 품 현 재 액	60	58	2	85	59	27	
	출 자 · 출 연 금 액 출 집 행	9	5	4	20	22	△2	
	출 자 · 출 연 기 관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	재 무 제 표	자 산 총 계	15,416	14,369	1,047	18,607	17,961	646
		부 채 총 계	311	286	24	308	327	△19
		수 익 총 계	3,319	3,237	81	3,336	3,257	80
		비 용 총 계	2,371	2,243	127	2,555	2,467	89
	재 정 분 석 · 진 단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건 전 화 계 획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세 지 출 현 황	32	31	1	46	47	△1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 축 제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 사 신 축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 의 계 약 현 황	114	119	△5	68	72	△4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감사(평가)결과	외 부 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⑪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 용 자 심 사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채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 간 투 자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 1년 동안 우리 예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7,965	386,387	-	29,070	2,508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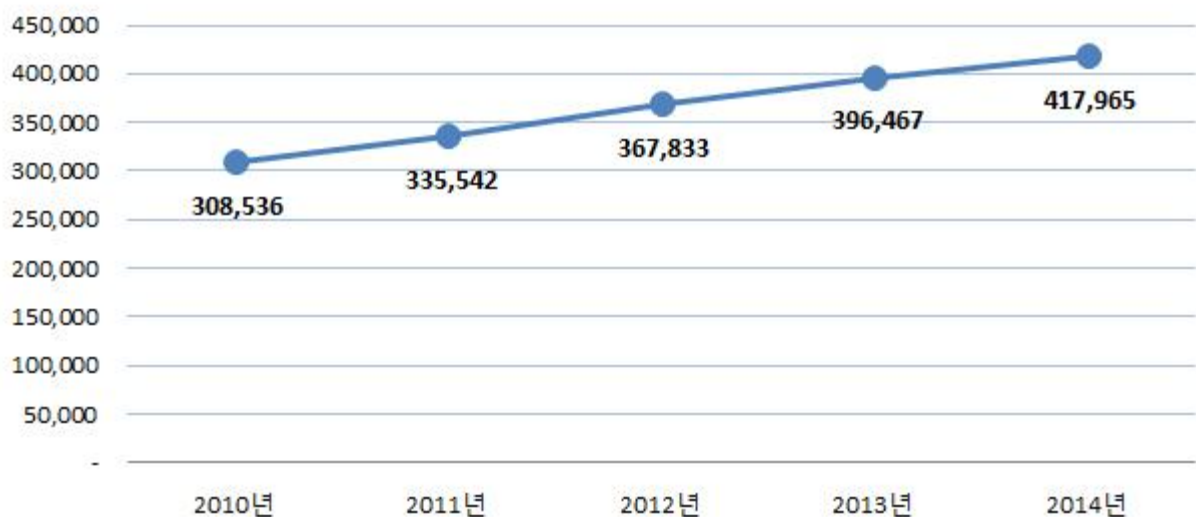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08,536	335,542	367,833	396,467	417,965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예천군 세입은 연평균 8%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세입자원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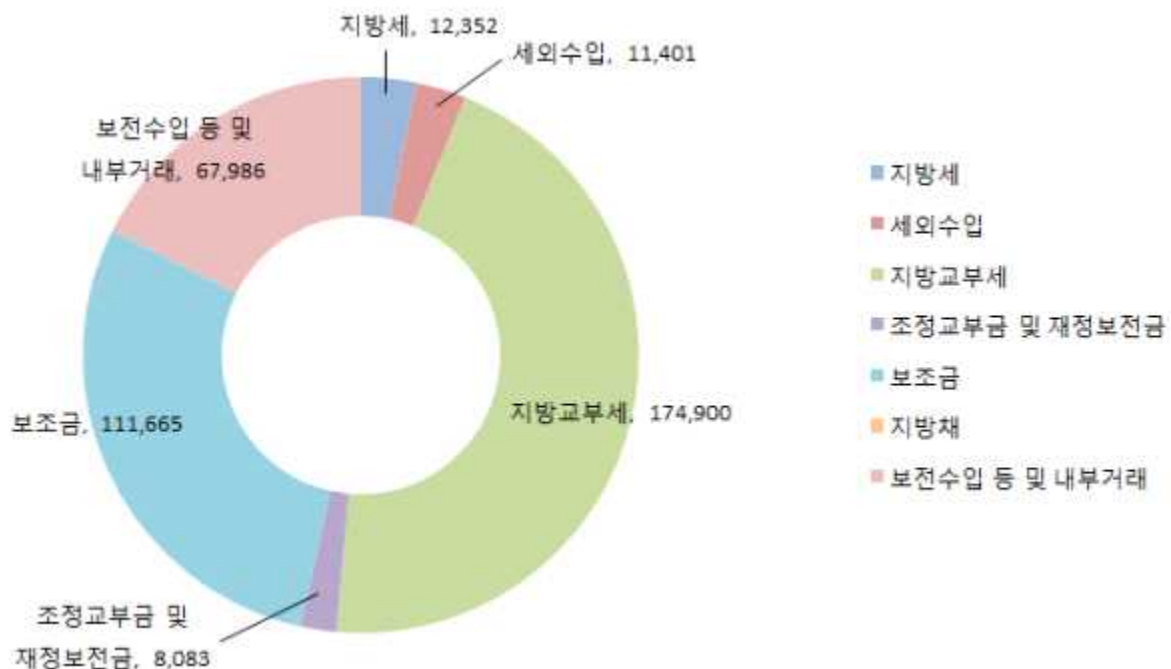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 자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5,540	100	317,307	100	350,379	100	372,383	100	386,387	100
지 방 세	10,881	4	10,464	3	11,352	3	12,044	3	12,352	3
세외수입	52,998	18	49,293	15	65,676	19	66,212	18	11,401	3
지방교부세	130,705	46	144,676	46	166,433	48	173,591	46	174,900	4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432	2	5,248	2	7,783	2	5,693	2	8,083	2
보 조 금	85,523	30	107,626	34	99,136	28	114,844	31	111,665	29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67,986	1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 2014년부터 세입과목 개편으로 인해 잉여금, 전입금 등이 기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변경되면서 세외수입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자원별 현황('14년, 일반회계)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결산액	10,881,463	10,464,078	11,351,955	12,044,077	12,352,123
인구수(명)	47,049	46,579	46,027	45,573	45,10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31	225	247	264	274

2-2. 세출결산

☐ 1년 동안 우리 예천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3,752	320,764	-	20,480	2,508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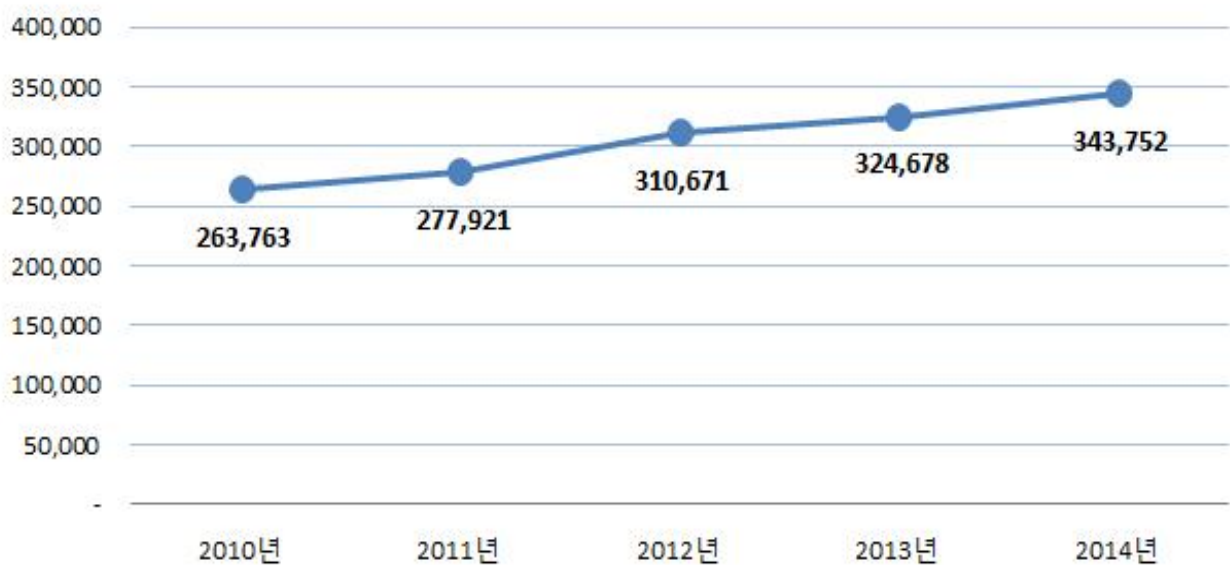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63,763	277,921	310,671	324,678	343,752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예천군 세출은 연평균 7%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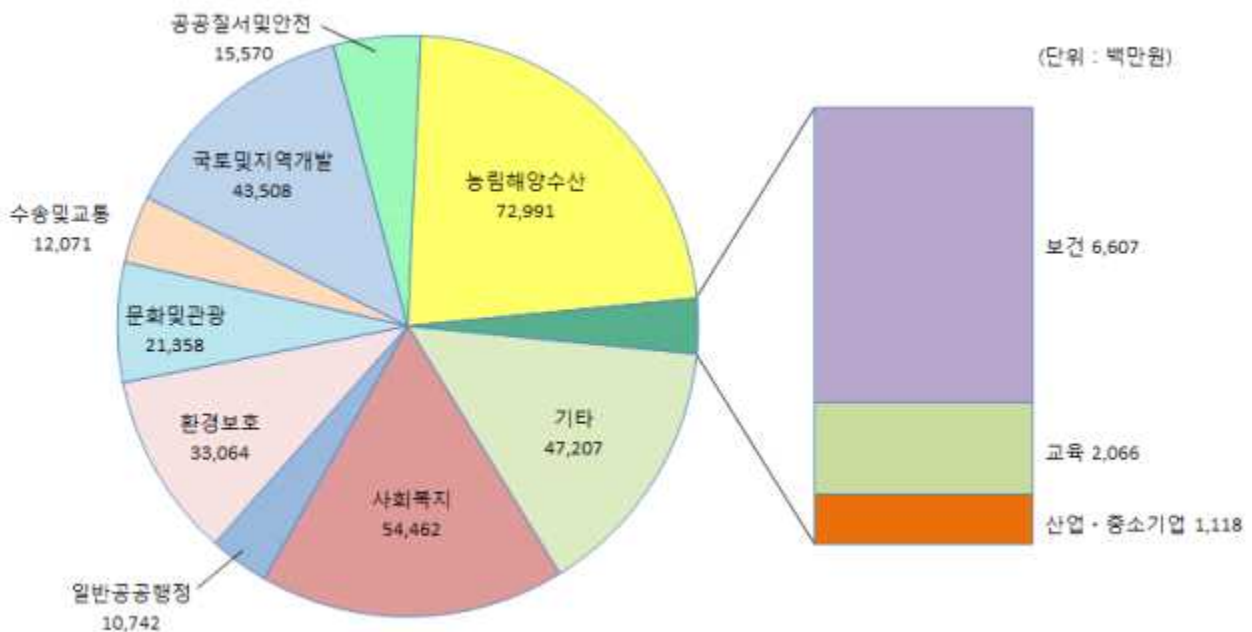
❖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5,999	100	264,688	100	294,966	100	306,105	100	320,764	100
일반공공행정			9,197	4	8,553	3	9,701	3	10,470	3	10,742	3
공공질서·안전			9,612	4	12,962	5	10,265	3	16,624	5	15,570	5
교육			1,578	1	1,688	1	2,007	1	2,906	1	2,066	1
문화 및 관광			17,148	7	15,629	6	21,940	7	17,823	6	21,358	6
환경보호			26,887	11	34,691	13	42,228	14	38,249	12	33,064	10
사회복지			41,028	16	42,033	16	42,636	14	47,521	16	54,462	17
보건			4,340	2	7,129	3	6,274	2	6,880	2	6,607	2
농림해양수산			59,484	24	57,138	21	58,570	20	66,008	22	72,991	23
산업·중소기업			587	1	594	1	701	1	538	1	1,118	1
수송 및 교통			11,305	4	14,318	5	14,675	5	13,422	4	12,071	3
국토·지역개발			25,407	10	29,117	11	42,791	15	40,190	13	43,508	14
과학기술			140	0	200	0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39,287	16	40,637	15	43,178	15	45,474	15	47,207	1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4년,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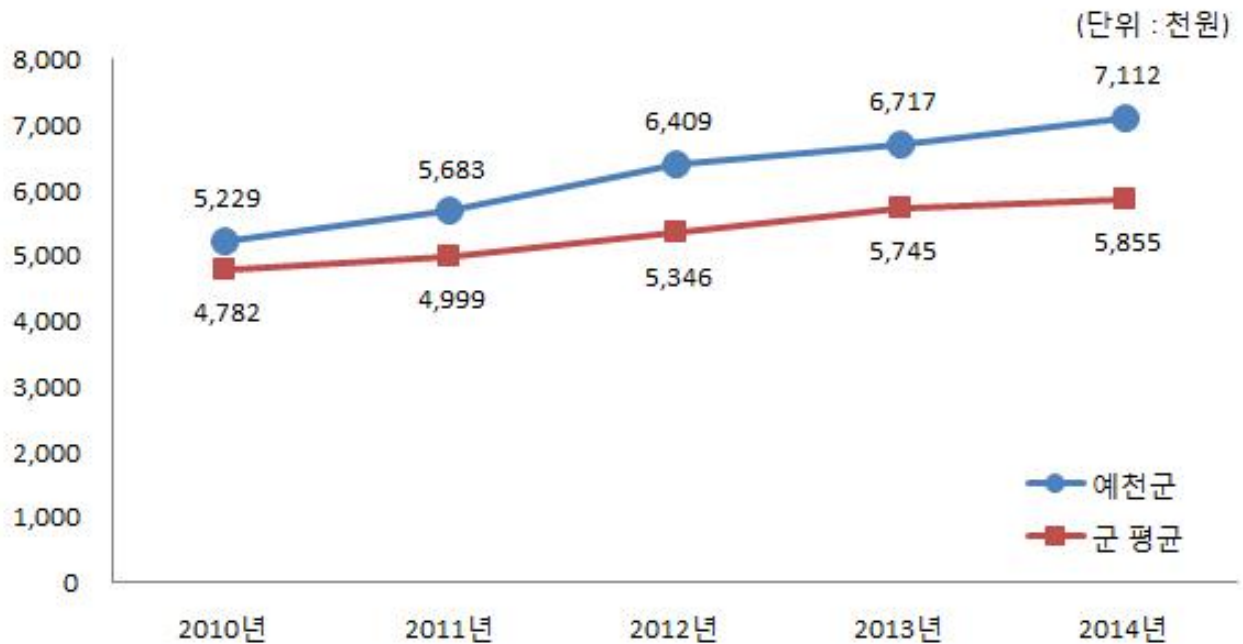


❖ 주민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45,999,234	264,688,158	294,965,504	306,104,624	320,764,198
인구수(명)	47,049	46,579	46,027	45,573	45,104
주민1인당 세출액	5,229	5,683	6,409	6,717	7,112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378,528	388,942	402,832	410,273	410,869	1,991,444	2.10%
자 체 수 입	29,384	30,056	30,695	31,450	32,172	153,757	2.30%
의 존 수 입	309,457	315,251	321,120	339,918	349,399	1,635,145	3.10%
지 방 채	6,000	6,000	16,000	10,000	-	38,000	18.6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688	37,635	35,017	28,905	29,299	164,544	△3.40%
② 세 출	378,528	388,942	402,832	410,273	410,869	1,991,444	2.10%
경 상 지 출	78,984	87,102	84,622	67,357	68,355	386,420	△3.50%
사 업 수 요	299,544	301,840	318,209	342,916	342,514	1,605,023	3.4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예천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8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2%	329,248	19,171	292,301	-	17,776

-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12.51%	11.43%	11.53%	12.22%	5.8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4년 세입 과목 개편으로 인해 잉여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7~8%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 적극적 행정을 실천하여 교부세, 보조금 등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향후, 도청 이전 시 인구 및 세수가 증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자립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재정자주도

-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예천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1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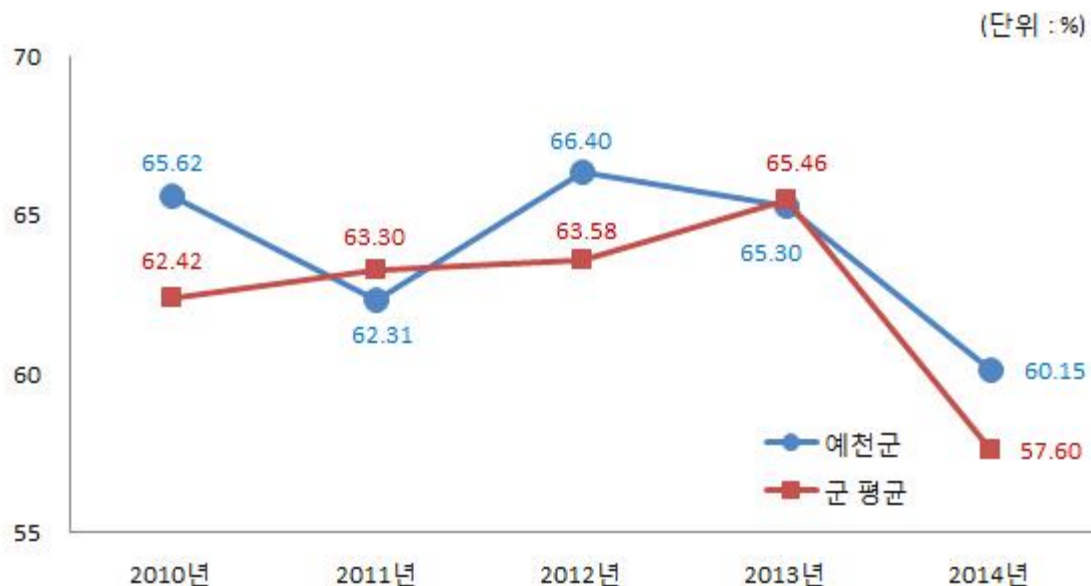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0.15%	329,248	198,046	113,426	-	17,776

-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 자주자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65.62%	62.31%	66.40%	65.30%	60.1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 2014년 세입 과목 개편으로 인해 잉여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면서 재정자주도가 전국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예천군은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적극적 확보 노력을 통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하락폭이 적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예천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4,525	342,797	6,405	733	△5,672	15,939	337,125	△12,600	3,338
일반회계	311,472	322,272	-	-	-	14,172	322,272	△10,800	3,371
기타 특별회계	12,803	19,199	6,405	703	△5,702	1,767	13,497	△694	1,073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50	1,326	-	30	30	-	1,356	△1,106	△1,106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9,837	△12,314	△11,555	△16,610	△12,600
통합재정수지 2	2,265	2,210	3,550	2,600	3,338

4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1,447,093	1,551,350	104,257
통합부채		29,040	31,056	2,016
	유동부채	3,976	6,092	2,116
	장기차입부채	19,541	19,600	59
	기타비유동부채	5,523	5,364	△159

- ▶ '14년 결산 순계기준
- ▶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1,436,931	1,541,643	104,712	
부채(B)	28,648	31,051	2,40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99	2.01	0.02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해당없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예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자료없음			9,707	5	0.05
출연 기관	소 계				9,707	5	0.05
	(재)예천군총 엑스포조직위원회				654	-	-
	(재)예천군민 장학회				9,053	5	0.06

▶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2,494	2,022	△47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2,494	2,022	△472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예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1,021	2,070	6,000	3,930	23,091
일 반 회 계		11,721	△1,480	-	1,480	10,241
특 별 회 계	소 계	9,300	3,550	6,000	2,450	12,850
	치수사업 특별회계	4,300	△2,450	-	2,450	1,850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000	6,000	6,000	-	11,000
기 금 회 계		-	-	-	-	-

-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2014년 6,000백만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채무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 관련 채무 2,450백만원을 조기상환 하였고, 향후 농공단지 분양 대금을 활용하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를 2017년까지 조기상환 할 예정이므로 우리 예천군의 채무규모는 조절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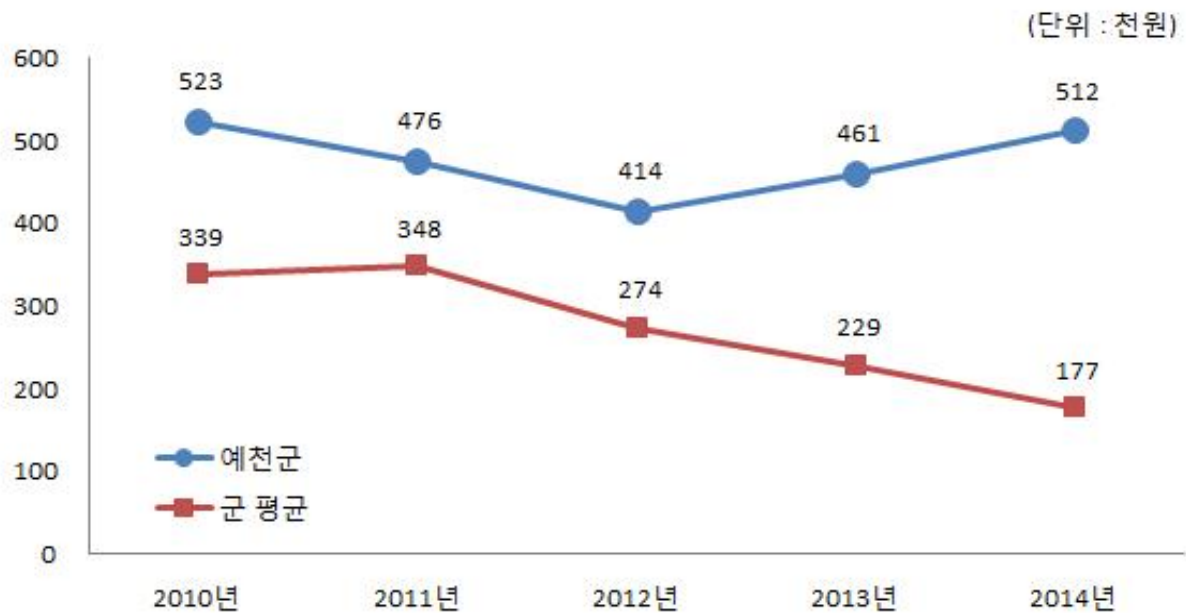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24,601	22,183	19,070	21,021	23,091
인구수	47,049	46,579	46,027	45,573	45,104
주민1인당채무 (천원)	523	476	414	461	512

-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7,000	12,600	10,900	7,400	8,900
발행액(B)	-	-	-	5,000	6,000
발행비율(B/A*100)	-	-	-	67.57	67.42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없음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874	△388	358	746	6,486
일 반 회 계		5,314	15	15	-	5,329
특 별 회 계	소 계	1,561	△403	344	747	1,1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	-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	-	11	11	23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71	-	4	4	171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697	△198	269	467	499
	발전수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670	△205	60	265	465
	치수사업특별회계	-	-	-	-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	-	-
기 금		-	-	-	-	-

- ▶ '1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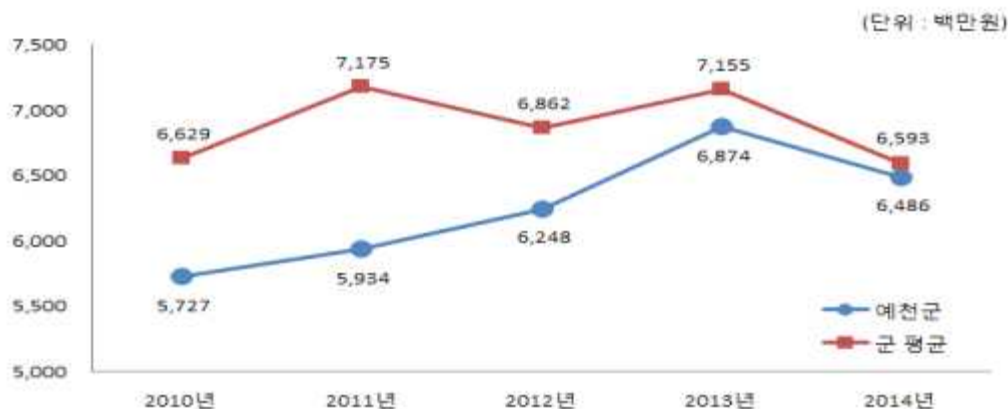
❖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권현황	5,727	5,934	6,248	6,874	6,486

-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0,764	2,823	0.88%	
일반운영비		1,454	0.45%	
여 비		672	0.21%	
업무추진비		316	0.10%	
직무수행경비		83	0.03%	
자산취득비		298	0.0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 :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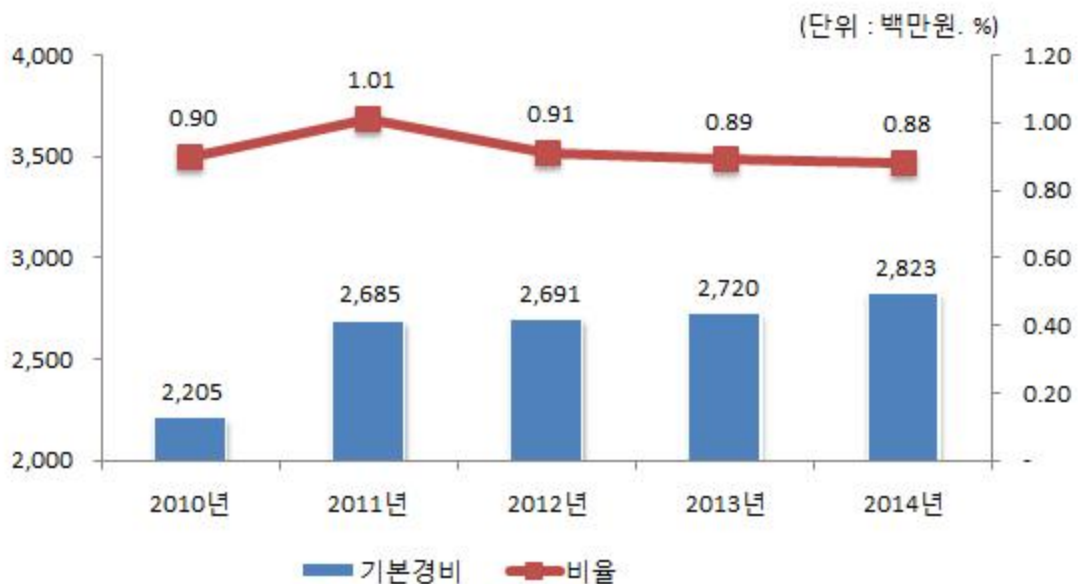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5,999	264,688	294,966	306,105	320,764
기본경비	2,205	2,685	2,691	2,720	2,823
비율	0.90%	1.01%	0.91%	0.89%	0.88%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예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836m²이 적어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m², 백만원)

예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m ²)	예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m ²)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m ²)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 (백만원)
1,929m ²	3,765m ²	△1,836m ²	-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예천군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0,764	44,323	13.82%	
인건비(101)		35,464	11.06%	
직무수행경비(204)		1,074	0.33%	
포상금(303)		1,808	0.56%	
연금부담금 등 (304)		5,977	1.86%	

-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45,999	264,688	294,966	306,105	320,764
인건비(B)	37,037	37,840	40,336	42,640	44,323
인건비비율(B/A)	15.06%	14.30%	13.67%	13.93%	13.82%

-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예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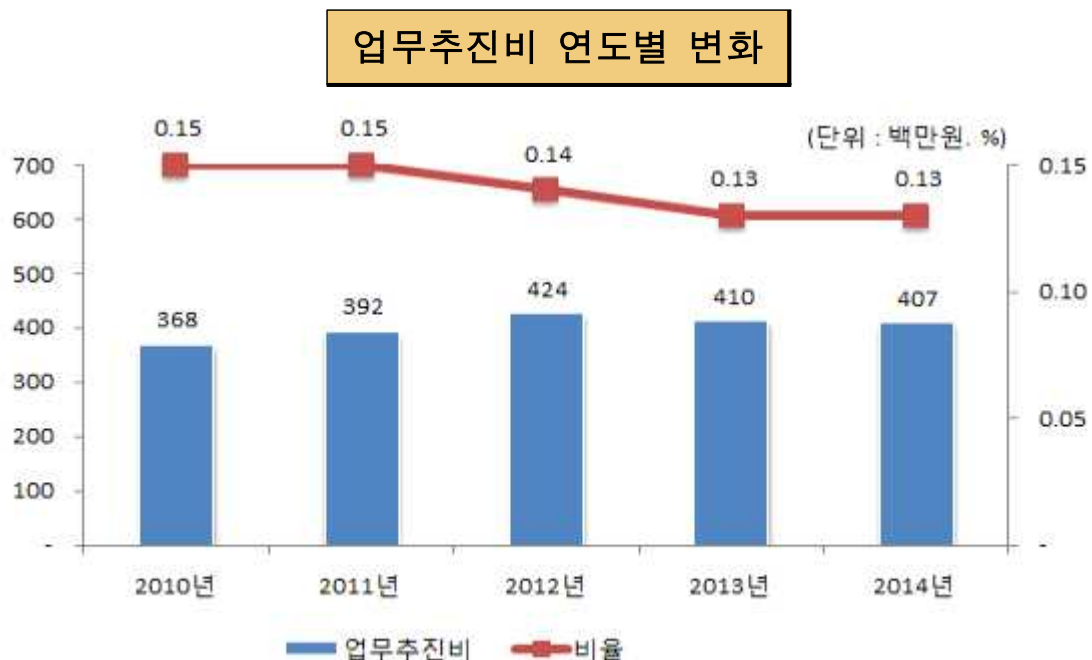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0,764	407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6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1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5,999	264,688	294,966	306,105	320,764
업무추진비	368	392	424	410	407
비율	0.15%	0.15%	0.14%	0.13%	0.13%



☞ 2012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로 업무추진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예년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1 참고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1-18 ~ 01-27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교육심화과정 해외선진지 현장 견학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1	5.1	
02-19 ~ 02-24	경북사과 홍보 행사	홍콩, 베트남	2	4.3	
02-25 ~ 02-28	도·시군 상생네트워크 구축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	일본	1	1.8	
03-11 ~ 03-20	방송통신 담당공무원 선진지 시찰연수	미국, 캐나다	1	4.5	
03-17 ~ 03-22	새마을 해외 시범마을 선정 현지조사	베트남	1	1.6	
03-24 ~ 03-31	방재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1	3.3	
03-28 ~ 04-04	국외 관광인프라 선진사례 조사	프랑스, 스페인	1	4.4	
04-05 ~ 04-10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교육	독일	1	3.1	
04-06 ~ 04-11	예천군 군정기획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9	16.1	
04-16 ~ 04-23	사진영상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1	3.6	
04-16 ~ 04-24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회사무직원 국외연수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2	7.5	
04-17 ~ 04-24	정부3.0 핵심리더 국외연수	노르웨이, 핀란드	1	4.5	
06-25 ~ 07-01	북경 국제여유박람회 공동홍보관 운영	중국	2	3.8	
07-11 ~ 07-13	일본 필드아처리장 견학	일본	2	1.8	
07-30 ~ 08-08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교육심화과정 해외 선진지 견학	호주, 뉴질랜드	1	4.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8-02 ~ 08-0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담당자 해외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1	4.4	
08-06 ~ 08-13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08-21 ~ 08-25	한일중고 양궁교류전 참가 및 선진 체육시설 시찰	일본	2	6.9	단체장
08-26 ~ 09-03	친환경로컬푸드 해외선진사례 조사	프랑스, 벨기에	1	4	
08-27 ~ 09-03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사업 해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	4.3	
08-28 ~ 09-05	건축 선진도시 해외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1	4.2	
09-15 ~ 09-19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	중국	6	9	
09-15 ~ 09-20	환경측정 분석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연수	일본	1	2.7	
09-15 ~ 09-22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3	
09-17 ~ 09-26	산불 담당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1	4.4	
09-21 ~ 09-26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 탐방	중국	1	1.1	
09-23 ~ 09-27	친환경, 6차산업, 선진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일본	3	4.1	
09-23 ~ 10-01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1	3.6	
09-26 ~ 10-03	식품위생 공무원 식품안전 해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4.5	
09-27 ~ 10-02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대만, 홍콩	1	1.6	
09-29 ~ 10-02	예천군-중화인민공화국 보계시 자매결연 협의차 국외방문	중국	5	4	단체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9-30 ~ 10-08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해 외 방역 선진지 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4.9	
10-07 ~ 10-15	민원공무원 해외시찰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1	4.5	
10-10 ~ 10-18	제11기 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과제 국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2	10	
10-27 ~ 10-31	경북형 마을영농 해외실태조사(2차)	일본	1	1.3	
10-27 ~ 11-04	모범운전종사자 및 교통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체코, 폴란드, 헝가리	1	3.8	
10-27 ~ 11-05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1	4.8	
11-08 ~ 11-15	귀농귀촌활성화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프랑스, 독일	1	3.2	
11-11 ~ 11-15	군정유공자 국외연수 1기	중국	20	24	
11-14 ~ 11-21	농업기계 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1	3.1	
11-16 ~ 11-20	군정유공자 국외연수 2기	중국	25	31.5	
11-17 ~ 11-22	농정업무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호주	1	3.4	
11-25 ~ 12-04	북유럽 선진 보육정책 등 국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	4.8	
11-27 ~ 12-01	군정유공자 국외연수 3기	중국	20	24	
11-28 ~ 12-05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업무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1	3.6	
12-03 ~ 12-10	국가지점번호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외정책 연수	프랑스, 영국	1	3.8	
12-21 ~ 12-26	예천군의회의원 국외선진지방제도 연수	미얀마	4	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예천군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20,764	371	0.12%	9	41,242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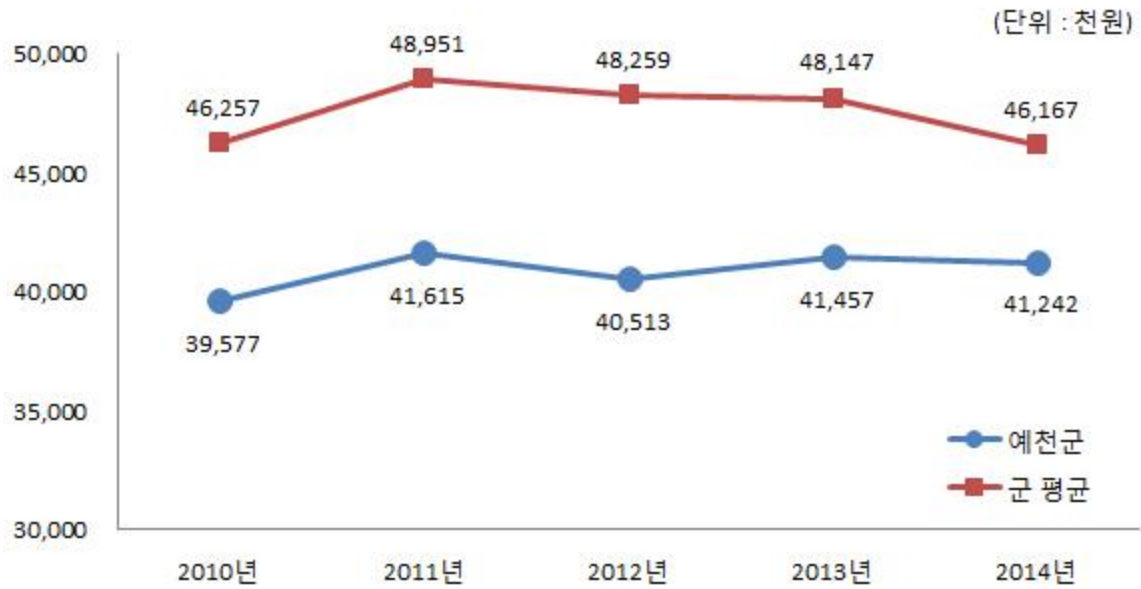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5,999	264,688	294,966	306,105	320,764
의회경비	356	375	365	373	371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4%	0.12%	0.12%	0.1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39,577	41,615	40,513	41,457	41,24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9	9	2,16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09-29 ~ 10-02	예천군- 중화인민공화국 보계시 자매결연 추진 협의차 국외방문	중국	의원 1명 (직원1명)	1
12-21 ~ 12-26	예천군의회의원 국외선진지방제도 연수	미얀마	의원 9명 (직원 4명)	18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27	320,764	958	0.30%	1,15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660	653	677	780	827
세출결산액 (B)	245,999	264,688	294,966	306,105	320,764
맞춤형 복지비 (C)	848	833	886	738	958
비율(C/B)	0.34%	0.31%	0.30%	0.24%	0.30%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285	1,276	1,308	946	1,15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 우리 예천군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1,065	28,560	31.36%
시설비 (401-01)	89,989	28,325	31.48%
감리비 (401-02)	821	150	18.28%
시설부대비 (401-03)	255	85	33.4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분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69,784	80,629	85,791	88,920	91,06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566	22,944	10,889	15,481	28,560
비율(B/A)	10.84%	28.46%	12.69%	17.41%	31.3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497	2,501	4
지방세	752	730	△22
세외수입	1,744	1,771	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471	2,485	2,441	2,497	2,501
지방세	868	966	916	752	730
세외수입	1,603	1,519	1,525	1,744	1,771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 예천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절반수준의 양호한 체납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해당없음

- ☐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예천군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4,462	13,245	-	8,783	28,399	1,296	511	40	2,188
국 비	31,416	7,443	-	3,840	19,326	656	-	-	151
시·도비	6,793	2,273	-	2,271	1,966	167	90	-	26
시·군·구비	16,253	3,529	-	2,672	7,107	473	421	40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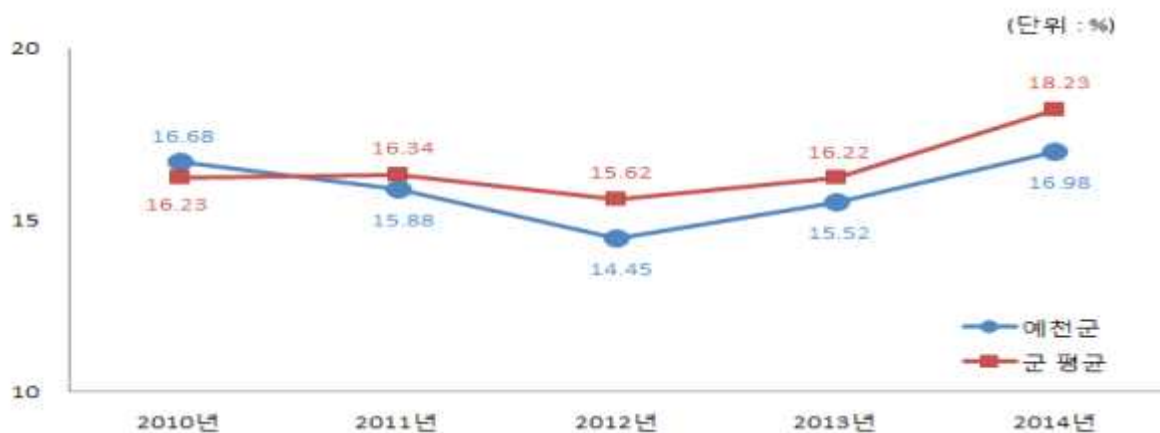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45,999	264,688	294,966	306,105	320,764
사회복지분야(B)	41,028	42,033	42,636	47,521	54,462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68%	15.88%	14.45%	15.52%	16.98%
인구수(C)	47,049	46,579	46,027	45,573	45,10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72	902	926	1,043	1,207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예천군의 사회복지비는 동종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20,764	44,473	13.86%	
민간경상보조(307-02)		7,530	2.35%	
사회단체보조(307-03)		449	0.14%	
민간행사보조(307-04)		1,072	0.33%	
사회복지보조(307-10)		10,679	3.33%	
민간자본보조(402-01)		24,743	7.7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14년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2 참고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5,999	264,688	294,966	306,105	320,764
지방보조금(민간)	9,074	4,833	5,976	44,111	44,473
비율	3.69%	1.83%	2.03%	14.41%	13.86%

- ▶ '10~'12년도 지방보조금(민간)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7-3.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14년 한해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0,764	854	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5,999	264,688	294,966	306,105	320,764
행사·축제경비	1,677	1,626	2,742	736	854
비율	0.68%	0.61%	0.93%	0.24%	0.27%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우리 예천군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행사·축제경비가 적은 편입니다. 2012년 예천세계 곤충엑스포 개최로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2013년 이후에는 예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예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677	△312	831	1,143	1,365	
기초생활자활기금		168	14	14	-	183	미적용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1	-	2	2	100	"
노인복지기금		315	7	7	-	322	"
식품진흥기금		66	3	8	5	69	"
재난관리기금		507	△136	396	532	370	"
옥외광고정비기금		14	△3	-	3	11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507	△198	402	600	309	"

-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960	989	1,564	1,677	1,365

-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써, 다음 표는 우리 예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16	76.59	104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8.14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회계 의존율	4.59	4.5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집행률	8	8.55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	7.36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5	10.9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관리 적정성	15	11.7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57	11.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11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은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52,466	638,527	2,393	98,068	599	10,751	454,260	725,844	
토 지	25,552	130,671	815	27,245	590	10,353	25,777	147,562	
건 물	368	110,597	13	4,871	7	385	374	115,083	
입 목 축	352,083	6,282	161	307	-	-	352,244	6,589	
공 작 물	8,128	389,323	1,402	65,509	1	12	9,529	454,819	
기계기구	95	800	1	136	-	-	96	936	
선 박	-	-	-	-	-	-	-	-	
항 공 기	-	-	-	-	-	-	-	-	
무체재산	70	543	1	1	1	1	70	543	
유가증권	66,160	33	-	-	-	-	66,160	33	
용익물권	-	-	-	-	-	-	-	-	
회 원 권	10	279	-	-	-	-	10	279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90	5,787	110	500	95	314	705	5,973	
구 매	-	-	110	500	-	-	-	-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2	5	-	-	
기 타	-	-	-	-	93	30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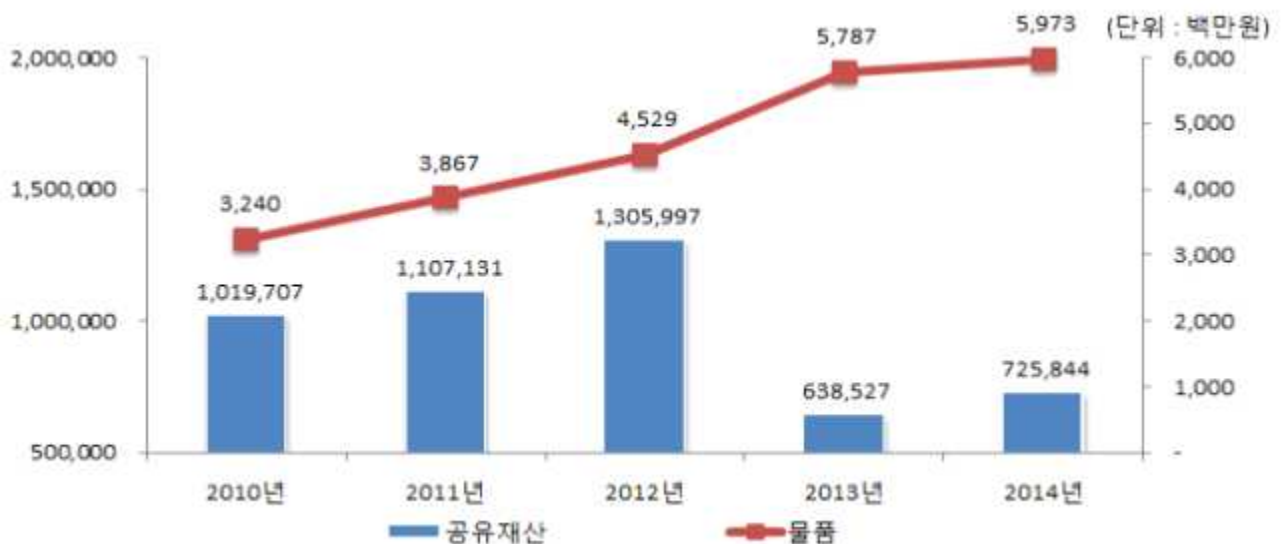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1,019,707	1,107,131	1,305,997	638,527	725,844
물 품	3,240	3,867	4,529	5,787	5,97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예천군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3,752	-	-	889	0.26%	
일 반 회 계	320,764	-	-	889	0.28%	
특 별 회 계	20,480	-	-	-	-	
기 금	2,508	-	-	-	-	

▶ '14회계년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63,763	277,921	310,671	324,678	343,752
출연금 (D)	1,382	687	5,402	494	889
출연금 비율 (D/A)(%)	0.52%	0.25%	1.74%	0.15%	0.2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2012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로의 출연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예년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 연 금	합 계	889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51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 체육대회 지원법	2014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급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230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전출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40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및 제4조 1항	2014년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 출연금 납부
	한국지역진흥재단	5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1항	2014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경북도청	201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42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2014년도 재단법인 경북 농민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출연금 납부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제3항	201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150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 1항	새마을운동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납부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사용협약서 체결에 따름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 생활관 사용 협약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43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예천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금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25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 지급(카드사용 적립액)

8-4.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을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예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	298	9,707	5
출연 기관	소계	1	298	9,707	5
	(재)예천군충엑스포 조직위원회	-	230	654	-
	(재)예천군민장학회	1	68	9,053	5

-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없음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436,931	1,541,643	104,713	1,860,711
부채 총계	28,648	31,051	2,403	30,777
비용 총계	224,337	237,057	12,720	255,534
수익 총계	323,743	331,868	8,126	333,62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 열린군정 > 예산정보 > 지방재정공시)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동종단체평균	비 고
I.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15%	2.86%	
	2. 실질수지비율	5.93%	10.00%	
	3. 경상수지비율	55.97%	65.07%	
	4. 관리채무비율	5.30%	3.78%	
	5. 관리채무부담비율	10.32%	8.61%	
	6. 관리채무상환비율	1.05%	0.94%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35.84%	27.85%	
	8. 공기업부채비율	0%	7.58%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	△2.24%	
II.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4.89%	7.74%	
	10-1. 자체세입증감률	6.09%	3.68%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3.70%	13.11%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30.09%	11.30%	
	12. 출연·출자금비율	0.15%	1.62%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90.85%	30.70%	
	13. 의무지출비율	65.24%	61.08%	
	13-1. 의무지출 증감률	△1.05%	4.86%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4.57%	5.98%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15.01%	18.73%	
	15. 자본시설지출비율	42.00%	44.25%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6.06%	6.44%	
III.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85	1.001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048	△0.3059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536	1.0870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948	△0.2881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88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48	0.032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795	0.1611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371	0.105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623	△0.10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461	△0.0447	

- ▶ 위의 자료는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
-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6. 2월 예정)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분석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4623 >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군 평균($\Delta 0.1096$)보다 매우 높은 지표임. 이는 2012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로 인해 전년에는 낮은 지표값을 보였지만, 2013년에는 행사축제경비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향후에도 적극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가 낮거나 군민의 호응도가 낮은 행사 축제경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85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048 >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와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군 평균(1.0018/ $\Delta 0.3059$)보다 뛰어남.

< 자체세입 증감률 : 6.09% >

- 자체세입 증감률은 군 평균(3.68%)보다 높은 증감률을 보이는 지표임. 이는 경북도청 이전, 백두대간 테라피 조성사업, 제2농공단지 조성 및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것이 가장 핵심적 요인이 되었음. 또한 매년 자동차의 증가('12년 18,860대→'13년 19,327대)에 따른 자동차세('12년 4,201백만원→'13년 4,418백만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자체세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10년과 2011년에 불황의 여파로 자체세입이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18,207	17,162	16,067	16,150	17,388	17,400

나. 미흡사례 분석

< 실질수지비율 : 5.93% >

- 실질수지비율은 군 평균(10.00%)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이는 지표임.
- 이는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지출액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향후에는 실질수지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입구조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35.84% >

-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은 군 평균(27.85%)보다 높은 지표임. 이는 장기차입부채가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특히 조속한 상환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표임.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Delta 0.2461$ >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군 평균($\Delta 0.0447$)보다 낮은 지표임. 이는 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가 전체 지표값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사회복지보조 예산
 - 2012년 : 5,042백만원
 - 2013년 : 7,325백만원

다. 개선사항

- 실질수지비율을 높이기 위해 세입구조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 대비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과 더불어 추가 차입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행정이 필요함.
- 각종 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업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불성실한 단체를 배제하고 신규 단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리체계를 통해 민간행사보조금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3,210	3,014	3,131	3,140	3,221
비과세	2,595	2,264	2,284	2,360	2,440
감면	615	749	848	780	782
지방세 징수액 (B)	10,881	10,464	11,352	12,044	12,352
비과세·감면율 (A/A+B)	22.78%	22.36%	21.62%	20.68%	20.68%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3,140	100.00%	3,221	100.00%	81	2.59%
일 반 공 공 행 정	644	20.52%	733	22.75%	89	13.77%
공공질서 및 안전	30	0.97%	32	0.99%	1	4.82%
교 육	146	4.66%	129	3.99%	△18	△12.12%
문 화 및 관 광	56	1.79%	61	1.91%	5	9.09%
환 경 보 호	-	-	-	-	-	-
사 회 복 지	261	8.30%	255	7.90%	△6	△2.31%
보 건	3	0.10%	8	0.24%	5	153.92%
농 립 해 양 수 산	75	2.40%	84	2.61%	9	11.53%
산 업 · 중 소 기 업	36	1.14%	44	1.37%	9	23.98%
수 송 및 교 통	3	0.09%	3	0.11%	1	17.78%
국토 및 지역개발	35	1.11%	12	0.37%	△23	△66.31%
과 학 기 술	3	0.08%	2	0.07%	0	△10.93%
국 가	1,689	53.78%	1,718	53.35%	30	1.76%
외 국	-	-	-	-	-	-
기 타	159	5.06%	140	4.34%	△19	△11.96%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221	2,440	660	-	122	-
보 통 세	소 계	3,221	2,440	660	-	122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83	51	32	-	-	-
	재산세	2,727	2,351	376	-	-	-
	자동차세	290	38	252	-	-	-
	지방소득세	122	-	-	-	122	-
	담배소비세	-	-	-	-	-	-
목 적 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 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2	7,493
여성정책추진사업	5	1,49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5,101
자치단체 특화사업	5	897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예천군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842	7,505	95.70%
여성정책추진사업	1,402	1,373	97.9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530	5,261	95.13%
자치단체 특화사업	910	870	95.63%

-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예천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3,606	8,985	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운영계획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985	
기획감사실	예천군 이미지 홍보 예산 지원	754	계속사업
	웅비예천 건설을 위한 용역비 확대 편성	350	"
주민복지과	지역맞춤형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운영	83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24	"
	경로당활성화 사업 및 관학연계 사업	827	"
새마을경제과	예천읍 승강장 개선	25	"
	중소기업 유치	168	"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존 사업	3,079	"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360	"
농정과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362	"
	시설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800	"
산림축산과	산간·오지 지역 문화공간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736	"
농업기술센터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3	"
	농기계 임대 사업	1,950	"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예천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예천곤충페스티벌	0801 ~0810	파충류 특별전시, 마술(복화술)공연, 곤충체험, 체험부스	71	47	23
예천세계활축제	1015 ~1019	거리퍼레이드, 개막식, 활전시, 글로벌 활 시연단 공연, 각종 이벤트, 심포지엄, 폐막식	747	164	583
우리음식및생활문화 전시체험전	1015 ~1019	음식전시,우수농산물가공품전시, 생활문화전시,무료시음회	20	0	20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0820 ~0820	농촌다문화 가정 지원, 전문, 생활 개선회원 등 봉사단 조직 상담 및 멘토링 결연, 어르신 효행사 등	10	3	7
도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0710 ~0710	예천군연합회 우리민요 부르기, 우수회원 표창,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 문화공연, 예천지역문화체험	30	0	30
예천 용궁순대 축제	0731 ~0803	용궁순대 홍보, 농특산물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00	40	60
곤충나라 Clean 예천 농산물 대축제	1015 ~1019	농특산물 홍보 판매, 추수감사제, 우수 농특산물 전시, 체험행사, 문화예술공연	285	0	285
경북사과 해외수출 촉진 홍보행사	0219 ~0224	홍보판촉행사, 수입바이어 상담, 유통환경조사	25	0	25
예천사과 해외판촉 행사	0425 ~0501	홍보판촉행사, 수입바이어 상담, 시식행사 등	20	6	14
예천삼강주막 막걸리축제	0801 ~0803	개막축하공연, 막걸리 주제 기획전, 돌담길 갤러리 운영 기상 음주 체험교실 떡메치기 체험	100	0	100
무형문화재 해외공연 지원	0203 ~0930	통명농요 공연 시연	40	20	20
서하전국백일장	0614 ~0614	글쓰기(운문, 산문) 및 그리기, 각종 체험행사	15	0	15

(단위 : 백만원)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전국한시백일장	1014 ~1014	작사(추모 국파 전원발 선생) 및 지역탐방	20	0	20
예천유등문화제	0425 ~0427	중대형 유등띄우기, 소망등달기, 목련음악회, 문화예술공연, 기타 전시 및 체험행사 운영	142	0	142
단샘다례축제	1018 ~1018	헌다례, 기로연다례, 성년례, 두리차회 등	15	0	15
예천군민노래자랑	1019 ~1019	군민 노래경연 및 초청가수 공연	10	0	10
예천예술제	0722 ~0810	전시 및 공연행사, 퍼포먼스 등	20	0	20
예천아리랑경창대회	0719 ~0719	예천아리랑 경연 및 초청공연	18	3	15
예천아리랑제	0920 ~0920	백일장, 음악회, 금모래강걷기 등	10	0	10
전국시낭송대회	1025 ~1025	시낭송 대회 및 초청공연	20	0	20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1018 ~1018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지 설명 및 인기가수 초청 축하공연	50	15	35
예천아리랑창극공연	1015 ~1023	뮤지컬 '조선의 명재상 약포 정탁 대감 이야기' 공연	30	15	15
전통소리보존회 창극공연	1017 ~1017	아리랑 창극공연(별동대감)	15	0	15
달집태우기 행사	0214 ~0214	연날리기, 다리밟기, 국악공연, 고유제, 달집태우기 등	10	5	5
전국 서예(휘호)대전	1101 ~1206	서예대전(현장 휘호), 시상식 및 전시회	139	93	46
세계저명작가 전시회 개최	1014 ~1020	국제 명가서예 전시회, 퍼포먼스, 전통문화체험 등	40	20	20

(단위 : 백만원)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오페라 공연	0419 ~1129	오페라 공연	25	20	5
예천관광8경 사진공모전	1111 ~1122	시상내역(총상금 8,000천 원)	15	0	15
불교시낭송대회	1229 ~1229	시인 및 시낭송가의 시낭송, 공연 등	20	0	20
아리랑 한마당 축제	1017 ~1017	아리랑 공연	15	0	15
삼강주막 상설공연	0614 ~1026	공연 : 풍물, 전통농요, 민요, 국악 및 퓨전음악, 색소폰 연주 등 체험행사 : 떡메치기, 도예, 국악 등	100	30	70
경북소년체육대회 (육상경기)	0326 ~0327	대회명 : 2014경북소년체육대회 참가인원 : 800명 장소 : 예천공설운동장	20	0	20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0418 ~0421	대회명 : 춘계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참가인원 : 3000명 장소 : 예천공설운동장	150	0	150
예천군수기 전국태권도대회	1122 ~1122	종목 : 태권도 인원 : 400명 장소 : 예천학생실내체육관	10	0	10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	0423 ~0425	종목 : 육상 참가인원 : 600명 장소 : 예천공설운동장	50	0	50
전국대학대항 육상경기대회	0919 ~0920	종목 : 육상 참가인원 : 600명 장소 : 예천공설운동장	45	0	45
읍면순회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0412 ~1231	종목 : 게이트볼대회 참가인원 : 24팀250명 개최회수 : 6회	12	0	12
예천군수배 경북남.여궁도대회	1018 ~1018	종목:궁도 참여인원:400명 장소:무학정	20	0	20
예천군민 민속놀이대회	0214 ~0214	종목:윷놀이 참가인원:180팀1,200명 장소:예천학생실내체육관	12	0	12
군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0614 ~0614	종목 : 걷기대회 참여인원 : 2,500명	13	0	13

(단위 : 백만원)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도지사기 활체조대회	1108 ~1108	대회명 : 경북도지사기생활체조대회 종목 : 에어로빅스 참가인원 : 800명 장소 : 예천군문화체육센터	20	0	20
여자복싱 세계 슈퍼2체급 타이틀매치	0301 ~0301	복싱 미니급 및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80	0	80
전국 스카이다이빙 대회	0920 ~0920	종목 : 스카이다이빙 참가인원 : 500명 장소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30	0	30
예천군민체육대회	1016 ~1016	인원 : 20,000명 종목 : 육상,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팔씨름 등 장소 : 예천공설운동장	150	0	150
경북도지사기 전국 초중양궁대회	0630 ~0712	전국 초중학교 양궁대회 개최	70	20	50
한국중고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	0728 ~0801	중고 양궁대회	50	0	50
어르신건강축제	1017 ~1017	식전행사 : 보건소운동동호회 2팀시연 노인의날기념식 어르신건강체조경연대회12팀	65	0	65
예천 은붕어잡이 체험행사	0802 ~0802	민물고기 잡이 직접체험	70	0	70
예천참우축제	1015 ~1019	예천참우 전시관, 홍보, 판매부스 운영으로 예천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	60	0	60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0101 ~1019	축산물 할인판매 및 시식행사 등을 통한 축산물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10	3	7
예천 상설시장 활성화 이벤트	0601 ~0930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15	0	15
도시민초청투어 프로그램	0127 ~1231	도시민초청 장보기 투어	25	0	25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0616 ~0616	특별강연, 의식행사, 우수 새마을 지도자 표창, 단합행사, 노래자랑	15	0	15

(단위 : 백만원)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다문화가정 어울림 행사	1116 ~1116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10	0	10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1018 ~1018	다문화가정 동거부부 5쌍 합동 전통혼례	19	0	19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예천군 여성대회	0919 ~0919	여성주간기념식 및 여성화합 한마당	12	0	12
예천군 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	1015 ~1015	예천군 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	10	0	10
할매할배의날 선포식	1025 ~1025	할매할배의날선포식 및 부대행사	10	0	10
군민의날 자매단체 등 초청행사	1015 ~1019	군민의날 기념식, 군민상 시상, 환영만찬	17	0	17
이장 워크숍 및 체육대회	0923 ~0923	이장 직무교육, 한마음체육대회	25	0	25
새해 해맞이 행사	0101 ~0101	새해 해맞이 행사, 각종 이벤트 등	20	0	20

- ▶ 대상사업 : 광역 5천만원 이상, 기초 1천만원 이상
-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전체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 열린군정 > 예산정보 > 지방재정공시)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 대상사업 : '14년 준공된 사업

9-10. 수의계약 현황

■ 우리 예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33	121,177	535	11,369	29.19%	9.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적	건수	783	685	516	554	535
	금액	18,575	21,906	10,181	11,889	11,36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1,599	-19

-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174	-1,599
인건비 절감	372	-196
지방의회경비 절감	43	22
업무추진비 절감	-26	1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23	41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42	-2,601
지방청사 관리.운영	336	750
읍면동 통합운영	-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386	-19
지방세 징수율 제고	321	192
지방세 체납액 축소	-72	5
경상세외수입 확충	400	33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8	-226
탄력세율 적용	-245	-327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우리 예천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상북도	2014.4.16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이행강제금 추징 (14,036천원)	이행강제금 부과 (14,036천원)
"	"	예천제2농공단지조성공사 포장두께 산출 부적정 등	과다계상금액 감액 (95,473천원)	설계변경시 감액 (95,473천원)
"	"	우계~생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과다계상금액 감액 (45,214천원)	설계변경시 감액 (45,214천원)
"	"	폐기물 처리용역 단가 적용 부적정	회수 1,530천원 감액 375천원	회수 (1,530천원) 설계변경시 감액 (2건 375천원)
"	"	예천목재문화체험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등 (31,003천원)	과다계상된 제경비 감액 (31,003천원)	설계변경시 감액 (31,003천원)
"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부적정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추징	미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3건 2,100천원)
"	"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미부과된 건에 대하여 추징	농지보전부담금 추징 (3건 1,933천원)
"	"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감액 94,033천원)	총괄1회 설계변경시 감액 (94,033천원)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과다계상금액 회수 (1,935천원)	과다집행공사비 회수 (3건 1,196천원) 과다계상공사비 회수 (4업체 5건 739천원)
"	"	엔지니어링 용역비 계상 부적정	과다집행된 용역비 회수 (7,264천원) 과다계상된 용역비 회수 (811천원)	과다집행용역비 회수 (15건 7,264천원) 설계변경시 감액 (3건 840천원)
"	2014.7.3.	감면 취득세 추징	취득세 감면요건 상실자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추징	감면된 취득세 추징 (28건 15,488천원)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 2014회계년도에 우리 예천군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도정역점시책추진 우수시군 평가	경상북도 우수	증액 140백만원
증액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 우수(3위)	증액 90백만원
증액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행정자치부 최우수	증액 210백만원
증액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평가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증액 250백만원
증액	2014 안전문화대상	국민안전처 최우수	증액 100백만원

-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예천군에서 '14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심사 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예천지구)	94,193	21,377	2,000	70,816	2019	2010	30%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600	5,600	-	-	2014	2011	100%
감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6,444	6,444	-	-	2015	2011	95%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5,200	-	1,725	3,475	2016	2011	57%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건립	5,034	-	5,034	-	2014	2012	100%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10,000	400	1,400	8,200	2016	2012	45%
백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7,425	69	488	6,868	2016	2012	5%
사과수출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3,347	3,347	-	-	2013	2012	100%
성현교 개체공사	2,389	1,889	500	-	2015	2012	100%
예천공설테니스장 비가림시설설치	2,000	-	625	1,375	2015	2012	95%
예천 차집관거 정비사업	5,257	-	1,428	3,829	2016	2012	49%
낙동강 쌍절암구간 탐방길 조성	2,500	-	2,500	-	2015	2013	100%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심사 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5,963	8,955	8,766	8,242	2015	2013	78%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	10,500	1,000	2,200	7,300	2016	2013	68%
우계교 가설공사	7,700	2,068	3,470	2,162	2015	2013	100%
지보 마전 마을하수처리 시설 설치	6,030	3,717	2,313	-	2015	2013	99%
풍양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13,849	1,000	600	12,249	2017	2013	20%
문화회관 ~ 변전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120	-	2,678	4,442	2016	2013	40%
제1회 예천세계활축제	750	-	750	-	2014	2013	100%
읍실 농촌마을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3,160	-	-	3,160	2016	2014	5%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6,370	-	20	80	2015	2014	20%
신음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3,600	-	-	3,600	2016	2014	5%
예천군 신청사 건립	32,500	2,500	1,000	29,000	2017	2014	3%

-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4년에 추진한 사업

11-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담당자	문화관광과 최관열 (☎ 650-690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동강 연안의 우수한 강 문화와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특화						
○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녹색문화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01월 ~ 2019. 12월 (9년간)						
○ 위 치 :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211,141㎡, 건축연면적 5,73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1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94,193	21,377	2,000	9,429	61,387
국 비		48,096	9,223	1,400	6,600	30,873
시 도 비		6,184	1,187	180	849	3,968
시군구비		22,628	10,967	420	1,980	9,261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17,285	-	-	-	17,285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1. 11월 ~ 2014. 10월 : 관련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완료						
○ 2012. 02월 ~ 2014. 12월 : 토지보상업무 완료						
○ 2015. 01월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5. 08월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						
○ 2015. 12월 : 우회도로개설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당초	휴양문화, 전시·체험, 공공편의, 상가 및 숙박시설 등 조성	115,452	2011~2015 (5년간)	2014. 08월 중간평가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변경	〃	94,193	2011~2019 (9년간)			

사업명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자	건축도시과 김정민 (☎650-6341)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량 분산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01월 ~ 2014. 08월 (3년 8개월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900m B=2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5,600	4,200	1,400	-	-
국 비	2,800	2,800	-	-	-
시 도 비	280	125	155	-	-
시군구비	2,520	1,275	1245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4. 08월 :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 L=900m B=25m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감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담당자	환경관리과 전용걸 (☎650-6345)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식수염 오염 및 수량부족으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감천면 미급수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01월 ~ 2015. 12월 (4년간)

○ 위 치 : 예천군 감천면 일원

○ 규 모 : 배수관 부설 L=47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 소요자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4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6,444	6,444	-	-	-
국 비	4,510	4,510	-	-	-
시 도 비	580	580	-	-	-
시군구비	1,354	1,354	-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2. 03월 : 감천상수도(1차) 공사 착공

○ 2013. 01월 : 감천상수도(2차) 공사 착공

○ 2013. 09월 : 감천상수도(1차)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015. 08월 : 감천상수도(2차)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축산과 김신훈 (☎650-6574)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1월 ~ 2016. 12월 (5년간)

○ 위 치 : 예천군 도효자로 2142(구. 용두휴게공원)

○ 규 모 : 건축면적 918.1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5,200	-	1,725	1,057	2,418
국 비	4,160	-	1,380	678	2,102
시 도 비	312	-	103	51	158
시군구비	728	-	242	328	158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5. 08월 : 목재체험장 내·외부 벽체, 천정 목재마감공사

○ 2015. 08월 : 목재체험장 내부 바닥마감공사

□ 향후계획

○ 2016. 12월 : 전기·통신·소방공사 마무리

○ 2016. 12월 : 전시분야 세부연출 등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담당자	농정과 안홍모 (☎650-6271)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1월 ~ 2014. 12월 (2년간)
- 위 치 :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7-1외 12필지
- 규 모 : 연면적 4,522㎡(선별장, 집하 및 출하장, 저온창고, 예냉실)
유통장비(선별기외 5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3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5,034	-	5,034	-	-
국 비	1,500	-	1,500	-	-
시 도 비	450	-	450	-	-
시군구비	1,550	-	1,550	-	-
지 방 채		-	-	-	-
민간자본	1,504	-	1,504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4. 05월 : 사업 착공
- 2014. 12월 : 사업 준공
- 2015. 02월 : 사업 정산 완료

□ 향후계획

- 2015. 04월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시작
- 예천군 농산물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내실화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	담당자	농정과 안성철 (☎650-6274)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대표 테마인 화분매개곤충과 고품질 친환경사과를 주제로 하는 휴식과 레저, 체험이 공존하는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1월 ~ 2016. 12월 (4년간)

○ 위 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백석리(백석저수지) 일원

○ 규 모 : 사과·곤충 테마파크 76,000m²정도

□ 소요자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10,000	400	1,400	3,000	5,200
국 비	5,000	200	700	1,500	2,600
시 도 비	1,500	60	100	300	1,040
시군구비	3,500	140	600	1,200	1,56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5%)

○ 2014. 03월 : 기본계획 협의완료(도 농촌개발과)

○ 2014. 05월 :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14. 07월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2014. 09월 : 사업발주 및 계속사업 시행

□ 향후계획

○ 2016. 10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백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담당자	건축도시과 김정민 (☎650-6341)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한 수변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람중심의 여유로운 거리 조성으로 녹색도시로 성장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1월 ~ 2016. 12월 (5년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백전천)
- 규 모 : 생태하천 복원사업 L=36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4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7,425	69	1,379	2,665	3,312
국 비	4,455	48	719	2,076	1,612
시 도 비	1,114	1	180	129	804
시군구비	1,856	20	480	460	896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1. 06월 : 도심하천 시범사업 선정(MOU 체결)
- 2012. 11월 ~ 2014 0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4. 05월 :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경상북도) 심의 완료
- 2014. 08월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완료
- 2015. 07월 : 도 원가심사 및 군 일상감사 완료

□ 향후계획

- 2015. 07월 : 토지 보상협의를(2015. 7월 현재 보상 지급율 97%)
- 2015. 07월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2016. 12월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사과수출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농정과 송영석 (☎650-6276)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정적인 생산·수출기반 구축과 수입국 시설승인기준에 적합한 선과장 건립
- “예천사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로 수출시장 확대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1월 ~ 2013. 12월 (2년간)
- 위 치 : 예천읍 우계리 384-1번지외 4필지
- 규 모 : 저온저장고 1,011m², 선별 및 집하장 : 1,375m²
야적장 380m², 선별 및 포장기기 5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347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3,347	3,347	-	-	-
국 비	-	-	-	-	-
시 도 비	300	300	-	-	-
시군구비	700	700	-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2,347	2,347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3. 05월 : 건축설계 완료
- 2013. 06월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2013. 12월 : 사업완료

□ 향후계획

-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예천사과 수출확대
- 연간 500~600톤 정도의 물량을 처리하고, 연간 50~100톤을 수출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성현교 개체공사	담당자	건설교통과 김창영 (☎650-6334)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위험시설로 교량이 노후하여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개체가 시급하며, 마을간의 연결교량으로 도로이용자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4월 ~ 2015. 05월 (3년간)

○ 위 치 :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

○ 규 모 : 교량개체 L=75m, B=9.2m

□ 소요자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8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2,389	1,889	500	-	-
국 비	-	-	-	-	-
시 도 비	150	150	-	-	-
시군구비	2,239	1,739	50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3. 04월 : 사업 착공

○ 2015. 05월 : 사업 완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공설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담당자	문화체육사업소 황주섭 (☎650-6093)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계절 테니스 훈련을 통한 테니스 동호인 건강증진 및 기량향상

○ 테니스 동호인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1월 ~ 2015. 08월 (10개월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32-1번지 일원

○ 규 모 : 전천후 시설 (L=63m, B=37m/2,33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2,000	-	625	1,375	-
국 비	600	-	175	425	-
시 도 비	420	-	136	284	-
시군구비	980	-	314	666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건축부문 갤러리 및 판넬 설치 마감공사 진행 중

○ 빗물이용시설 마감공사 진행 중

□ 향후계획

○ 2015. 08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 차집관거 정비사업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정일 (☎650-6371)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용문면 생활하수 차집관로의 정비로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방지 및 하천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월 ~ 2016. 12월 (3년간)

○ 위 치 : 용문면 소재지 ~ 예천읍 백전리

○ 규 모 : 차집관거(D80~300) L=7.830km,
맨홀펌프장 5개소, 배수설비 35가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5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5,257	-	1,428	1,914	1,915
국 비	3,680	-	1,000	1,340	1,34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577	-	428	574	575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9%)

○ 2014. 04월 : 사업 착공

○ 2015. 07월 : 공정율 49%

□ 향후계획

○ 2015. 10월 : 2차공사 준공

○ 2016. 03월 : 3차공사 착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차집관거시설 L=7.014km → L=8.013km

사업명	낙동강 쌍절암구간 탐방로조성	담당자	산림축산과 서천석 (☎650-6313)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강주막, 명승 제16호인 회룡포와 비룡교, 삼수정 등 문화유적을 연결하는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낙동강 문화유적 및 낙동강변의 천혜관광 자원을 명소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6월 ~ 2015. 06월 (1년간)

○ 위 치 :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 삼강리 일원

○ 규 모 : 탐방로 조성 2.0km 및 편의시설 설치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2,500	-	2,500	-	-
국 비	1,250	-	1,250	-	-
시 도 비	375	-	375	-	-
시군구비	875	-	875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데크로드 1,420m(유리데크, 목교 2개소), 황토포장 240m

○ 전망대 2개소, 느티나무 195본, 편의시설 등

□ 향후계획

○ 생태탐방로 사후관리(월 2회이상 정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건축도시과 정대웅 (☎650-6949)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경북도청이 이전 해움에 따른 공장 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고 예천군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군민의 고용 증대를 통해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01월 ~ 2015. 12월 (5년간)

○ 위 치 :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

○ 규 모 : 단지조성 257,000m²(산업용지 185,891m²)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9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25,963	8,955	8,766	8,242	-
국 비	5,442	700	2,500	2,242	-
시 도 비	389	215	174	-	-
시군구비	3,132	3,040	92	-	-
지 방 채	17,000	5,000	6,000	6,000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8%)

○ 2012. 11월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3. 12월 : 시설공사 1차, 2차, 3차 시행 (공정율 78%)

□ 향후계획

○ 2015. 12월 : 공사 준공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	담당자	곤충연구소 김혁제 (☎650-8262)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백두대간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자연체험시설과 어우어진 체류형 관광명소로 성장하고, 곤충을 테마로 한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3월 ~ 2016. 12월 (3년 9개월간)
- 위 치 : 예천군 상리면 은풍로 1045
- 규 모 : 총면적 165,100㎡ (곤충테마놀이기구, 곤충테마촌, 편의시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5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10,500	1,000	2,200	4,000	3,300
국 비	5,250	500	1,100	2,000	1,650
시 도 비	1,580	150	330	600	495
시군구비	3,670	350	770	1,400	1,155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8%)

- 곤충테마놀이기구의 모형터널 준공
- 편의시설의 입체주차장 및 하늘테크 준공

□ 향후계획

- 곤충테마촌의 곤충동화공연장, 곤충체험장, 곤충생태체험장, 캠핑장 설치
- 곤충테마놀이기구의 숲속의쉼터, 벅스어드벤처, 미로생태원 설치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우계교 가설공사	담당자	건축도시과 김정민 (☎650-6341)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도 927호선과 928호선이 예천읍 시가지 내에서 연결됨에 따른 교통 체증 해소 및 도시외곽도로 개설로 교통 분산 및 지역 간 균형개발 촉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1월 ~ 2015. 04월 (3년 4개월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백전리
- 규 모 : 교량가설 L=170m B=11.75m 접속도로 L=170m B=11.75m

☐ **소요자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7,700	2,068	3,470	2,162	-
국 비	-	-	-	-	-
특별교부세	700	-	292	408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7,000	2,068	3,178	1,754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5. 04월 : 교량가설 완료 L=170m B=11.75m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 당초)8,000백만원 변경)7,700백만원

사업명	지보 마전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정일 (☎650-6371)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청정 환경 보존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1월 ~ 2015. 12월 (3년간)
- 위 치 :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소화리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시설 Q=230m³/일, 하수관거시설 L=7.014km

☐ **소요자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6,030	3,717	2,313	-	-
국 비	4,221	2,602	1,619	-	-
시 도 비	218	135	83	-	-
시군구비	1,591	980	611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9%)**

- 2013. 06월 : 사업 착공
- 2015. 07월 : 하수처리장 시운전, 공정율 99%

☐ **향후계획**

- 2015. 08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하수관거시설 L=5.900km → L=7.014km
- 총사업비 : 5,900백만원 → 6,030백만원

사업명	풍양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담당자	환경관리과 전용걸 (☎650-6345)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식수염 오염 및 수량부족으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풍양면 미급수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1월 ~ 2017. 12월 (5년간)

○ 위 치 : 예천군 풍양면 일원

○ 규 모 : 송·배수관 부설 L=31km, 취·정수장 각 1개소, 배수지 1개소

□ 소요자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8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13,846	1,000	600	3,313	8,933
국 비	4,459	700	420	919	2,420
시 도 비	572	90	54	118	310
시군구비	1,332	210	126	276	72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7,483	-	-	2,000	5,48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5. 05월 : 풍양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06월 : 풍양상수도(1차)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6. 09월 : 풍양상수도(1차) 공사 준공

○ 2016. 09월 : 풍양상수도(2차) 공사 착공

○ 2017. 12월 : 풍양상수도(2차)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문화회관~변전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자	건축도시과 김정민 (☎650-6341)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월 ~ 2016. 12월 (3년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00m B=20~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1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7,120	-	2,678	4,442	-
국 비	3,560	-	1554	2,006	-
시 도 비	356	-	147	209	-
시군구비	3,204	-	977	2,227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5. 06월 : 도시계획도로(2공구) 착공
- 2015. 07월 : 도시계획도로(1공구) L=0.6km B=20m 완료

□ 향후계획

- 2015. 07월 : 도시계획도로(2공구) 토공 및 배수구조물 설치
- 2016. 12월 : 도시계획도로(2공구) 준공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 당초)6,400백만원 변경)7,120백만원

사업명	제1회 예천세계활축제	담당자	기획감사실 김문현 (☎650-6034)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 최초 활을 콘텐츠로 하는 체험, 및 행사 이벤트 중심의 축제 개최

○ 예천 활의 역사성 및 가치를 재조명하여 '활의 고장'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지역 경제 및 활 스포츠 산업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0. 15. ~ 10. 19. (5일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

○ 규 모 : 축제행사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750	-	-	-	-
국 비	-	-	-	-	-
시 도 비	100	-	100	-	-
시군구비	650	-	65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축제개최 : 2014. 10. 15. ~ 10. 19. (5일간)

□ 향후계획

○ 2015. 10. 15. ~ 10. 18. :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 91 -

사업명	읍실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정일 (☎650-6371)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하수를 분리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를 교체하여 하수관거 기능을 회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1월 ~ 2016. 12월 (2년간)
- 위 치 : 하리면 우곡리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장 Q=90m³/일, 하수관거 L=3.62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3,160	-	-	429	2,731
국 비	2,212	-	-	300	1,912
시 도 비	189	-	-	15	174
시군구비	759	-	-	114	645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4. 0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07월 : 용역 공정률 90%

☐ 향후계획

- 2015. 08월 : 사업 착공
- 2016.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담당자	새마을경제과 조재익 (☎650-6231)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청 이전에 대비한 예천읍의 기능 강화
- 음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머물고 싶은 친화적 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월 ~ 2015. 12월 (2년간)
- 위 치 : 예천읍 맛고을 길 일원(L=560m, B=5~7m)
- 규 모 : 도로정비, 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조성, 경관벽화, 보행자 편의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3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6,370	20	80	6,270	-
국 비	2,100	-	-	2,100	-
시 도 비	340	-	-	340	-
시군구비	3,060	20	80	2,96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870	-	-	87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4. 01월 : 1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02월 : 2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0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4. 10월 : 3차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2015. 07월 ~ 08월 : 지중화공사(전선·통신선·도시가스) 시행
- 2015. 07월 ~ 12월 : 토목·전기공사 시행
- 2015. 09월 ~ 12월 : 벽화 및 간판정비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 3,900백만원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비고
계	3,900	1,790	-	1,760	350	
기본구상 기본맞실시설계	120	-	-	120		
시장현대화사업	2,580	1,540	-	1,040		
간판정비	500	250	-	250		
전선지중화	700	-	-	350	350	

- 변경 : 6,370백만원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비고
계	6,370	2,100	340	3,060	870	
기본구상 기본맞실시설계	100			100		
시장현대화사업	3,500	2,100		1,400		
간판정비	500		150	350		
통산전선지중화	1,670	-	-	900	770	
도시가스공급관	200	-	30	70	100	
전기(가로등,LED)	400	-	160	240	-	

사업명	신음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정일 (☎650-6371)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하수를 분리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를 교체하여 하수관거 기능을 회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1월 ~ 2016. 12월 (2년간)
- 위 치 : 개포면 신음리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장 Q=100m³/일, 하수관거 L=4.43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3,600	-	-	429	3,171
국 비	2,520	-	-	300	2,220
시 도 비	130	-	-	15	115
시군구비	950	-	-	114	836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4. 0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07월 : 용역 공정율 90%

☐ **향후계획**

- 2015. 08월 : 사업 착공
- 2016.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군 신청사 건립	담당자	건축도시과 권영익 (☎650-6353)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청사의 노후화, 사무공간의 협소, 주차공간부족 등 제기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신청사 건립을 통해 군민의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9월 ~ 2017. 12월 (3년 3개월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353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41,386㎡, 연면적 15,692㎡(지하 1층, 지상 5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32,500	2,500	1,000	9,000	20,0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0,500	2,500	1,000	9,000	8,000
지 방 채	12,000	-	-	-	12,000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2014. 10월 : 안정행정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14. 11월 :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 2015. 01월 ~ 03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15. 03월 ~ 05월 : 건축물 현상설계 공모
- 2015. 03월 ~ 06월 : 기존 건물 철거
- 2015. 0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향후계획

- 2015. 08월 :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행
- 2015. 11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5. 12월 ~ 2017.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1-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예천군에서 '14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25,963	17,000	5,442	389	3,132	-	18,789	78%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4년에 추진한 사업

사업명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건축도시과 정대웅 (☎650-694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경북도청이 이전 해움에 따른 공장 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고 예천군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군민의 고용 증대를 통해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01월 ~ 2015. 12월 (5년간) ○ 위 치 :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 ○ 규 모 : 단지조성 257,000m²(산업용지 185,891m²)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9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계</th><th colspan="2">집행액</th><th colspan="2">향후 소요액</th></tr> <tr> <th>기투자</th><th>'14연도</th><th>'15연도</th><th>'16연도 이후</th></tr> </thead> <tbody> <tr> <td>계</td><td>25,963</td><td>8,955</td><td>8,766</td><td>8,242</td><td>-</td></tr> <tr> <td>국 비</td><td>5,442</td><td>700</td><td>2,500</td><td>2,242</td><td>-</td></tr> <tr> <td>시 도 비</td><td>389</td><td>215</td><td>174</td><td>-</td><td>-</td></tr> <tr> <td>시군구비</td><td>3,132</td><td>3,040</td><td>92</td><td>-</td><td>-</td></tr> <tr> <td>지 방 채</td><td>17,000</td><td>5,000</td><td>6,000</td><td>6,000</td><td>-</td></tr> <tr> <td>민간자본</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기 타</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8%) ○ 2012. 11월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3. 12월 : 시설공사 1차, 2차, 3차 시행 (공정률 78%) ☐ 향후계획 ○ 2015. 12월 : 공사 준공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25,963	8,955	8,766	8,242	-	국 비	5,442	700	2,500	2,242	-	시 도 비	389	215	174	-	-	시군구비	3,132	3,040	92	-	-	지 방 채	17,000	5,000	6,000	6,000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25,963	8,955	8,766	8,242	-																																																		
국 비	5,442	700	2,500	2,242	-																																																		
시 도 비	389	215	174	-	-																																																		
시군구비	3,132	3,040	92	-	-																																																		
지 방 채	17,000	5,000	6,000	6,000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11-3. 민간투자사업

■ 우리 예천군에서 '14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3년까지 부담액	'14년 부담액	'15년 이후 부담예정액	
BTL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푸른예천환경 주식회사	43,396	455	-	105,966	2015 ~ 2035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4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5년 이후는 추정액

사업명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정일 (☎650-6371)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기간 : 2012년 ~ 2015년 (4년간)

○ 위치 : 예천읍 일원

○ 민간사업자 : 푸른예천환경주식회사

○ 총사업비 : 43,396백만원

○ 사업규모 : 분류식 하수관거 46.5km, 배수설비 3,375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관리운영권 설정 20년 (2015 ~ 2034)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106,421	455	-	3,821	102,145
국 비	63,458	318	-	2,368	60,772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42,963	137	-	1,453	41,373
기 타	-	-	-	-	-

□ 추진단계(운영 중)

○ 2012. 07월 착공

○ 2015. 05월 사업 준공

○ 2015. 06월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지급

□ 향후계획

○ 2035. 05월까지 분기별 정부지급금 지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Ⅲ

특수공시

2015년 특수공시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14년 까지 투자비	비고
1	제1회 예천세계활축제	○ 사업기간 : 2014.10.15. ~ 10.19. ○ 사업규모 : 축제행사 1회 ○ 위 치 : 예천읍 남본리 310-1	750	750	
2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11.01. ~ 2015.12. ○ 사업규모 : 농공단지 조성 257,000m ² ○ 위 치 : 보문면 신월리 일원	25,963	17,721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 사업기간 : 2013.01. ~ 2014.12. ○ 사업규모 : 연면적 4,522m ² ○ 위 치 : 개포면 경진리 일원	5,034	5,034	
4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	○ 사업기간 : 2014.01 ~ 2015.05. ○ 사업규모 : 농기계 보관창고 및 사무실 신축(990m ²) ○ 위 치 : 풍양면 낙상리 205	4,630	4,630	
5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 사업기간 : 2011.07. ~ 2015.05. ○ 사업규모 : 저수지 1개소 ○ 위 치 : 감천면 덕울리	6,140	6,140	
6	우계교 가설공사	○ 사업기간 : 2012.01. ~ 2015.04. ○ 사업규모 : L=170m B=11.75m ○ 위 치 : 예천읍 우계리,백전리	7,700	5,538	
7	2014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대축제	○ 사업기간 : 2014.10.15. ~ 10.19. ○ 사업규모 : 축제행사 1회 ○ 위 치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300	300	

■ 제1회 예천세계활축제

— 목 적 —

- 활을 콘텐츠로 하는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 역량 강화
- 축제 관람객 유치로 지역 산업 경제 및 활 스포츠 산업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
- 사업기간 : 2014. 10. 15. ~ 2014. 10. 19. (5일간)
- 사업규모 : 축제행사 1회
- 총사업비 : 75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식행사 (거리퍼레이드, 개장식, 개막식, 폐막식)
 - 국제 행사 운영 (글로벌 활 시연단, 국제학술심포지엄)
 - 공연 (편사놀이뮤지컬, 무예24기 등)
 - 체험 (국궁.양궁활쏘기, 필드아처리, 활 만들기 등)
 - 기타 (세계활전시관, 멀티미디어쇼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집행액)	750	-	-	750	-
국 비	-	-	-	-	-
도 비	150	-	-	150	-
군 비	600	-	-	600	-

■ 사업추진 내역

- 2014. 03월 : 예천세계활축제 추진위원회 발족
- 2014. 03월 : 1차 추진위원회, 1차 집행위원회 개최
- 2014. 05월 : 2차 집행위원회 개최
- 2014. 06월 : 대행사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2014. 09월 : 관련부서, 기관 관계자 회의
- 2014. 10월 : 축제개막
- 2014. 12월 : 2차 추진위원회 개최

■ 기대효과

-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통한 '활의 고장' 브랜드 이미지 구축
- 다수의 관람객 유치로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육성

■ 관련 사진 등 첨부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목 적

- 중소기업체에 원활한 공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공단지 사업을 조기 시행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 01월 ~ 2015. 12월 (5년간)
- 사업규모 : 단지 조성 257,000m²
- 총사업비 : 25,963백만원
- 사업내용
 - 단지 조성 257,000m²(5블럭 21필지)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집행액)	25,963	1,255	7,700	8,766	8,242
국 비	5,442	200	500	2,500	2,242
도 비	389	15	200	174	-
군 비	20,132	1,040	7,000	6,092	6,000

■ 사업추진 내역

- 2012. 11월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13. 10월 : 공사 총괄계약 (지구내 토목공사)
- 2015. 04월 : 예천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2015. 12월 : 공사 준공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 기대효과

- 농촌 유희노동인력 고용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
- 제조업체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련 사진 등 첨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유통기반구축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7-1외 12필지
- 사업기간 : 2013. 01월 ~ 2014. 12월 (2년간)
- 사업규모 : 연면적 4,522m², 유통장비 6종
- 총사업비 : 5,034백만원
- 사업내용
 - 선별장, 집하 및 출하장, 저온창고, 예냉실, 사무실, 지게차, 선별기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집행액)	5,034			5,034	
국 비	1,500			1,500	
도 비	450			450	
군 비	1,550			1,550	
기 타	1,504			1,504	

■ 사업추진 내역

- 2014. 04월 : 입찰공고(건축, 냉장, 전기, 통신, 소방)
- 2014. 05월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2014. 05월 : 산지유통센터건립 착공
- 2014. 12월 : 산지유통센터건립 준공
- 2015. 02월 : 사업정산 완료
- 2015. 03월 : 준공식 개최

■ 기대효과

- 농산물 물류 효율화, 규모화로 물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규격 포장화로 상품성 개선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증대
- 산지유통시설 통합 구심체로서 유통거점단지 역할 수행

■ 관련 사진 등 첨부



■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

목 적

-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임대함으로 농가부채 및 경영부담 감소
- 농작업 기계화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205번지
- 사업기간 : 2014. 01월 ~ 2015. 05월
- 사업규모 : 농기계 보관창고 및 사무실 신축(990m²)
임대용 장비 25종 89대 구입
- 총사업비 : 1,815백만원
- 사업내용
 - 농기계 보관창고 및 사무실 신축(990m²)
 - 임대용 장비 25종 89대 구입
 -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장비 4종 7대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집행액)	4,630	1,631	1,184	1,815	-
국 비	1,472	482	496	494	-
도 비	441	144	149	148	-
군 비	2,717	1,005	539	1,173	-

■ 사업추진 내역

- 2014. 05월 :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설계
- 2014. 09월 :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사 착공
- 2015. 05월 :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
- 임대실적 : 20종 203대(6월말 기준)

■ 기대효과

-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으로 농기계 구입부담경감 및 생산비 절감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및 일손부족해소
- 원거리 농업인 농기계임대장비 활용 제고

■ 관련 사진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외부전경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전경

■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목 적

- 농업용수가 부족한 수용지구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군 감천면 덕울리
- 사업기간 : 2011. 07월 ~ 2015. 05월
- 사업규모 : 저수지 1개소(유효저수량 208.5천톤)
- 총사업비 : 6,140백만원
- 사업내용
 - 저수지 : 1개소(L=126.2m, H=25.3m, 유효저수량 208.5천톤)
 - 도 로 : 3조 L=1,489m, B=5.0(4.0)~4.0(3.0)m
 - 용수로 : 2조 L=3,054m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집행액)	6,140	3,429	1,800	911	-
국 비	4,298	2,400	1,260	638	-
도 비	471	309	162	-	-
군 비	1,371	720	378	273	-

■ 사업추진 내역

- 2008. 06월 : 기본조사 실시
- 2009. 07월 : 시행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11. 07월 : 공사 착공
- 2015. 05월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생산성 증대

■ 관련 사진 등 첨부



■ 우계교 가설공사

목 적

- 지방도 927호선과 928호선이 예천읍 시가지내에서 연결됨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 도시외곽도로 개설로 교통 분산 및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

■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백전리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5. 4월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170m B=11.75m, 접속도로 L=170m B=11.75m
- 총사업비 : 7,700백만원
- 사업내용
 - 교량가설 L=170m B=11.75m, 접속도로 L=170m B=11.75m
 - 보도 및 자전거도로 1식, 소공원 1개소, 경관조명 1식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집행액)	7,700	-	2,068	3,470	2,162
국 비	-	-	-	-	-
도 비	-	-	-	-	-
군 비	7,000	-	2,068	3,178	1,754
특교세	700	-	-	292	408

■ 사업추진 내역

- 2012. 3월 :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 2012. 4월 ~ 2013. 6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013. 7월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2015. 4월 : 공사 준공 및 개통

■ 기대효과

- 예천읍 시가지를 경유하는 차량들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 해소
- 용문사, 초간정, 금당실마을 등 용문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제공

■ 관련 사진 등 첨부



■ 2014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대축제

목 적

-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군민과 출향인, 도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로 개최

■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 사업기간 : 2014. 10. 15. ~ 10. 19. (5일간)
- 사업규모 : 축제행사 1회
- 총사업비 : 3억원
- 사업내용
 - 개막식,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노래자랑, 기타 공연 및 체험행사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집행액)	300	-	-	300	-
국 비	-	-	-	-	-
도 비	-	-	-	-	-
군 비	300	-	-	300	-

■ 사업추진 내역

- 2014. 08월 : 농산물축제 추진계획 보고
- 2014. 08월 : 농산물축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 2014. 09월 : 농산물축제 관련부서, 기관 관계자 회의
- 2014. 09월 : 축제대행사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2014. 10월 : 축제개막

■ 기대효과

-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추진으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
-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를 통한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관련 사진



IV 별지

◆ 별지 1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총 계		942	241,446	
01월 소계		78	25,333	
01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2	4,898	
	지역 농특산물 구입	23	11,498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10	3,187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7	500	
	명절 선물 구입	15	5,045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05	
	기타	-	-	
02월 소계		65	17,519	
02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7	6,194	
	지역 농특산물 구입	24	7,242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2	1,142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5	1,140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4	541	
	명절 선물 구입	1	558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2	702	
	기타	-	-	
03월 소계		70	16,894	
03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4	7,029	
	지역 농특산물 구입	32	6,124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187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4	835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8	2,514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05	
	기타	-	-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04월 소계		39	8,246	
04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4	5,232	
	지역 농특산물 구입	8	1,663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4	978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2	15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23	
	기타	-	-	
05월 소계		61	11,293	
05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43	8,134	
	지역 농특산물 구입	5	1,218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206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7	1,310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4	22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05	
	기타	-	-	
06월 소계		68	14,228	
06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3	6,491	
	지역 농특산물 구입	20	4,692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8	1,957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3	21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3	778	
	기타	1	100	
07월 소계		64	12,153	
07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2	6,670	
	지역 농특산물 구입	14	2,648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100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07월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6	1,693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7	46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82	
	기타	3	300	
08월 소계		55	9,538	
08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8	4,499	
	지역 농특산물 구입	13	2,734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315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7	1,323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3	25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17	
	기타	2	200	
09월 소계		83	25,204	
09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5	7,309	
	지역 농특산물 구입	26	13,232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2	404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6	1,272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4	437	
	명절 선물 구입	5	1,868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82	
	기타	4	400	
10월 소계		92	22,208	
10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42	10,080	
	지역 농특산물 구입	19	5,670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7	1,257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10	2,757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4	66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04	
	기타	9	1,580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11월 소계		103	25,542	
11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45	9,541	
	지역 농특산물 구입	39	9,392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9	2,758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5	2,185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3	886	
	기타	2	780	
12월 소계		161	52,478	
12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68	17,365	
	지역 농특산물 구입	49	14,684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2	387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20	5,968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14	12,60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4	796	
	기타	4	678	
13월 소계		3	810	
13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	810	
	지역 농특산물 구입	-	-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	-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	-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	-	
	기타	-	-	

◆ 별지 2 - '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7,530	7,530
사)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5	15
도시민 초청 투어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여성단체협의회	25	25
2014년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풍양청소년 공부방	7	7
2014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출렁다리마을 외 2	4	4
예천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64	64
예천문화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47	47
2014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	예천군여성단체 협의회	13	13
2014년 예천여성합창단 운영비 보조금 교부	예천여성합창단	20	20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월)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2014 예천군수지침봉사 연합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종합자원봉 사센터	22	22
2014년도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운영 보조금 교부	경북북부발전협 의회	20	20
201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교부(1월)	(주)다양한세상 외 5	21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보조금 교부	민주평통예천군 협의회	20	20
한국 천하명당 "십승지"사업(2013년도분) 보조금 교부(2차)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십승지사업단	68	68
자연유산 민속행사 보조금 교부	항목근보존회 외 1	5	5
2014 희망 달집태우기 보조금 교부	민예총예천지부	5	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20회 예천군민 민속놀이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생활체육 협의회	2	2
2014 희망 달집태우기 보조금 교부	민예총예천지부	5	5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교육 사업 보조금 교부	모범운전자회	1	1
모범운전자회 근무복장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모범운전자회	4	4
2014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급	예천군통합방위 협의회	15	15
2014년 그린스타트 추진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녹색희망 연합회	10	10
2014년(2013년 11~12월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농업협동 조합 외 15	52	52
무의탁독거노인돕기 2014 신년 호 콘서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한국노인 복지봉사회	3	3
예천군해병대전우회 한천보트장운영 보조금 지급	예천군해병대 전우회	5	5
2014년도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지역 발전협의회	7	7
2014예천유등문화제 보조금 교부	예천유등문화제 추진위원회	80	80
예천아리랑 경창대회 보조금 교부	한국국악협회예 천군지부	15	15
2014년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축산업협동 조합	19	19
2014년 쇠고기이력제(귀표장착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축산업협동 조합	110	110
2014년도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100	100
2014년 장계향선양회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장계향선양회 예천지회	3	3
용문사불교유물전시관 보조금 교부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용문사	60	60
유림전통문화의식(기로연) 재연 보조금 교부	예천향교회 외 1	5	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향교 향사비 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향교회 외 1	3	3
2014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처리비 지급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	360	360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 견학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맛고을길상인회	4	4
2014년 경북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교부	경북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10	10
2014년도 예천군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보조금 교부	예천군새마을회	15	15
2014년도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보조금 교부	예천군새마을회	5	5
2014년도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보조금 교부	예천군새마을회	8	8
2014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어울림한마당대회 지원 보조금 교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5	5
2014년도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다짐대회 지원 보조금 교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지회	5	5
2014년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10	10
2014년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3	3
2014년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유천면평생학습 마을추진위원회외 1	30	30
신평리 할머니 그림학교 보조금 교부	신평미술관	4	4
2014 예천군민노래자랑 보조금 교부	연예예술인협회 예천지회	10	10
제3회 전통소리문화예술보존회 창극공연 보조금 교부	전통소리문화 예술보존회	15	15
제11회 서하백일장 보조금 교부	한국문인협회 예천지부	15	15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보조금 교부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20	20
한국예총예천지회 보조금 교부 (예천예술제 10백만원 시낭송 20백만원 화보발간 10백만원)	(사)한국예총 예천지회외 2	40	40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통명농요보존회 해외공연 보조금 교부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15	15
경진예술촌 보조금 교부	경진예술촌	10	10
2014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	대한예수교장노회 예천교회당회	10	10
결혼이민자여성 국적취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10	10
예천군귀농인회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귀농인회	5	5
귀농인 임시거주지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귀농인회	2	2
2014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28	28
2014년도 범도민 독서생활화추진 운동 보조금 교부	예천군새마을회	8	8
21C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군새마을회	31	31
2014년도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새마을회	20	20
201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 노인복지관	10	1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 정보화마을외 2	4	4
2014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출렁다리 마을외 3	5	5
초정서예연구원 운영비 보조금	초정서예연구원	50	50
2014년(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급내역(2월분)	(주)다양한세상 외 5	21	21
2014년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천연합사업단	160	160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안동상공회의소	25	25
2014 예천군 여성자원봉사회 프로그램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여성자원 봉사회	6	6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 예천군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	예천군여성 자원봉사회	6	6
2014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2	2
2014년 노인교실 운영 보조금 지급	예천교회 늘푸른대학외 3	12	12
예천군 전통산업(용궁토끼간빵)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안동상공회의소	20	20
서원향사비 지원 보조금 교부	완담서원 외 8	9	9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 손수건 보급 및 홍보	문경소방서 예천소방	2	2
'오페라 속의 오페라' 공연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5	5
2014 전국곤충사진공모전 보조금 교부	한국사진작가협회 예천군지부	20	20
제9회 전국 한시백일장 보조금 교부	예천한사회	20	20
2014 충효교실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5	5
2014 문화학교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6	6
2014 단샘다레축제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15	15
2014년 청년CEO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	20
예천 세계 활 축제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세계활축제 추진위원회	700	700
무의탁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종합자원 봉사센터	3	3
2014 군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주)예천신문사	3	3
녹색어머니회 교통사고 예방활동 복장 및 용품 지원 보조금 교부	녹색어머니회	3	3
2014년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보조금 교부	(사)예천읍상설 시장번영회	15	1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초등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영진전문대학	124	124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보조금 교부	안동상공회의소	80	80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기행 보조금 교부	(사)대경문화 연구원	40	40
2014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3월분)	출렁다리마을 외 3	5	5
한국 천하명당 십승지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93	9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3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4	15	15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3월)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3	3
예천아리랑 창극공연(약포 정탁 뮤지컬)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30	3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사)한국국악협회 경북도지회	18	18
청소년수련관 내 갤러리 운영 보조금 교부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24	24
제3회 예천예술제 보조금 교부(2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10	10
2014 예천유등문화제 보조금 교부(2차)	예천유등문화제 추진위원회	100	100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협의회 외 1	107	107
2014 세계저명서예가 전시회 보조금 교부	사단법인초정서 예연구원	40	40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보조금 교부	신품미술관	18	18
전통민속문화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통명농요 보존회외 3	26	26
예천관광기념품(도자기) 포장재 제작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예천요	5	5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교부(3월)	(주)다양한세상	4	4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경북선비아카데미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연구회	9	9
향토문화사랑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연구회	5	5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민예총예천지부	19	19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새마을문고 예천군지부 외 1	4	4
2014년(1-3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농협농산물 유통사업소 외 3	15	15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4월분)	출렁다리마을 외 3	5	5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인센티브)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4월)	출렁다리마을	1	1
4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2014년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시골살이 아이들 외 1	40	40
향토문화사랑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문화연구회	2	2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교부(4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4	16	16
궁도교실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무학정	3	3
신품미술관 전시회 보조금 교부	신품미술관	5	5
201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 보조금 교부	(재)청소년폭력 재단경북지부장	2	2
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인센티브)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5월분)	출렁다리마을	0	0
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5월)	출렁다리마을 외 3	5	5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1차)	용문,하리 어린이집	10	10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5월)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교부(5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4	15	15
산수회 39차 정기총회 개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산수회	2	2
경북지구JC특우회 우정의날 독도수호결의대회 보조금 교부	예천제이씨 특우회	20	20
2014년 제64주년 6.25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재향군인회	2	2
2014년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녹색농촌체험 마을협의회장	20	20
2014년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하리면 은풍 준시마을 외 3	27	27
제2회 예천군수배 기수별 친선 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축구협회	3	3
14년 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 교부	(사)한국농업 경영인회	8	8
2014년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출렁다리녹색농 촌체험마을	300	300
제4회 웅비예천 영어 말하기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영진전문대학	25	25
2014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교부	(사)커뮤니티와 경제	50	50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교부	주식회사 한국에코팜	10	10
2014년 콩 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백태작목반 외 1	28	28
2014년 취업박람회 사업비 보조금 교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0
예비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교부(6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4	17	17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6월)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2차)	용문,하리 어린이집	3	3
2014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6월)	출렁다리 체험마을 외 3	5	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인센티브) 원 사업 보조금 지급(6월)	출렁다리마을	0	0
예천색소폰동호회 거리연주회 보조금 교부	예천색소폰 동호회	5	5
예천공처농요보존회 해외초청공연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공처농요 보존회	5	5
순수미술작가회 정기전 보조금 교부	순수미술작가회	2	2
예천아리랑 전국경창대회 보조금 교부	한국국악협회 예천군지부	3	3
제22회 예천아리랑제 보조금 교부	민예총예천지부	10	10
예천 관광8경 전국사진공모전개최 운영비 보조금 교부	한국사진작가협회 예천군지부	15	15
7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7월)	출렁다리마을 외 3	5	5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인센티브)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7월)	출렁다리마을	0	0
14년 예천군 농업경영인 워크숍 보조금 지급	예천군농업경영인 연합회장	20	20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3차)	용문,하리 어린이집	1	1
2014년(4-6월)농산물 수출촉진자금(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북지역본부예천군 농정지원단 외 3	9	9
예천군 홍보용 로고송 및 대중가요 제작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문화원	50	5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교부(7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4	16	16
예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 체육대회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의용소방대 연합회	3	3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인센티브)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8월)	출렁다리마을	0	0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8월)	출렁다리마을 외 3	5	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8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4차)	용문,하리 어린이집	1	1
2014년 콩 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증거친환경 작목반 외 1	28	28
2014년도(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8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4	16	16
2014 예천군 여성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군여성단체 협의회	12	12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보조금 교부	예천군종합자원 봉사센터	1	1
제1회 예천군수배 군민 친선 골프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예천군골프협회	5	5
제7회 농가주부모임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농가주부모임 예천군연합회	3	3
이스탄불 & 시군 문화교류의날 행사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11	11
무의탁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종합자원 봉사센터	3	3
세계 활 문화체험 및 학술 심포지엄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세계활축제 추진위원회	50	50
제3회 가족 독서골든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10	10
2014.제56회 예천군민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예천군여성운동 동호회	3	3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보조금 지급	(주)경북매일신문	50	50
제2회 휴휴페스티벌 보조금 지급	신품미술관	6	6
미술협회 예천지부 정기전 보조금 지급	(사)한국미술협회 예천지부	3	3
시가지 벽화그리기 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문화원	10	10
양파 긴급 수급안정을 위한 2014년산 양파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주지농산(주) 외 2	56	56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참가에 따른 보조금 교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천군농민회	2	2
통명농요보존회 해외공연 보조금 교부(2차)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25	25
9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제1회 아리랑 한마당 축제 보조금 교부	예천토속 아리랑보존회	15	15
1930년대 예천군지 증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20	20
광부화가들 연극공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명동예술극장	6	6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5차)	용문,하리 어린이집	2	2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9월분)	출렁다리마을 외 3	5	5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인센티브)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9월)	출렁다리마을	0	0
제1회 전국서예대전 보조금 교부	사단법인조정 서예연구원	150	150
2014년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2차)	시골살리아이들	31	3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교부(9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3	16	16
제7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한여농연합회	3	3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상사업비) 보조금 교부	회룡포 정보화마을	10	10
사진동우회 회원전 및 포항교류전 보조금 교부	예천사진동우회	3	3
제2회 휴휴페스티벌 보조금 교부(2차)	신품미술관	3	3
오페라 속의 오페라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20	20
2014년 인재양성원 모의 구술면접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함께 희망을 심어요" 사업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대한적십자사 예천군여성봉사회	3	3
경북선비문화포럼 보조금 교부	예천청년유도회	15	15
할매할배의날 선포식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경북지회	10	10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주식회사 한국에코팜	9	9
10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0월)	김명화외 3	5	5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인센티브)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0월)	김명화	0	0
2014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보조금 지급	경북뇌교육협회	1	1
2014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3	3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6차)	강춘희외 16	4	4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0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4	21	21
2014 예천유등문화제 보조금 교부(2차)	본청/일반회계/ 지출원	-38	-38
2014년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우주윤외 1	7	7
여성농업인 품물단 활성화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교부	(사)한국여성농업 경영인 예천군연합회	2	2
제13회 서예인연합회 회원전 보조금 교부	예천서예인 연합회	7	7
2014년(7-9월) 신선농산물 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풋고추 연합회 외 7	20	20
2014년(10월분) 신선농산물 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박기영외 2	3	3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인센티브)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1월)	김명화	0	0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1월분)	출렁다리마을 외 3	5	5
11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7차)	용문,하리 어린이집	1	1
예천한시집 발간 보조금 교부	예천한사회	1	1
한내글모임 동인지 발간 보조금 교부	한내글모임	2	2
2014년도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회원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교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5	5
2014년도「(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11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4	25	25
2014년 콩 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	고평1리 콩 작목반	14	14
초등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영진전문대학	-19	-19
예천연탄은행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연탄은행 운영위원회	5	5
'시와 국악의 만남' 공연 보조금 교부	대구불교방송	20	20
2014년 쇠고기이력제(귀표장착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4	-4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12월분)	출렁다리마을 외 3	5	5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센티브)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2월분)	출렁다리마을	0	0
2014년도「(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12월)	회룡포 주식회사 외 4	26	26
2015년 예천군 신년교례회 행사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번영회	3	3
2014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8차)	용문,하리 어린이집	4	4
1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6	6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년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사업 추가교부(회룡포)	회룡포 정보화마을	0	0
2014년도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회원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 교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0	0
결혼이민자여성 국적취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	-5
1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1	0	0
2014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처리비 지급	본청/일반회계/ 지출원	-43	-43
2014년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예천군수	0	0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보조금 교부	안동상공회의소	-10	-10
예천 세계 활 축제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청	-3	-3
제1회 전국서예대전 보조금 교부	사단법인초정 서예연구원	-11	-11
2014년도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지역 발전협의회	0	0
2014년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천연합사업단	-44	-44
2014년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보조금지급(운영비)	예천권병원	338	338
2014년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보조금 지급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50	50
2014년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 사업 보조금 지급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10	10
2014년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3	3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권병원	163	163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20	20
모점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4	4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건강새마을 위원회	40	40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운영비 지급	예천권병원	261	261
2014년 퇴원손상 조사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권병원	0	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관리 보조금 교부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90	90
생활개선회원신문우송료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20	20
경북향토음식계승전문가양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우리음식 연구회	8	8
2014년 농촌지도자회 운영지원 보조금	예천군농촌 지도자연합	2	2
2014년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지원 보조금	예천군농촌 지도자연합	27	27
2014년도 4-H신문보급 우송료 선급금 지원	예천군 4-H회	0	0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선금 지급	유천원에 작목회	5	5
2014년 농약안전사고방지 지원 사업 선금 지급	풍양면 청곡1리 마을	2	2
2014농업 CEO 양성교육(한국벤처농업대학 수학경비) 보조금 지급	농민 4명	4	4
어린이 농촌체험 활동 지원 선금 지급	신라식물원 외 1	15	15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선금 지급	대창고4-H회 외 5	5	5
농어촌 학생4-H회원 진로지도 선금 지급	감천중학교	5	5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10	10
경상북도생활개선회 활력화대회 행사지원 보조금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30	30
경상북도생활개선회 활력화대회 참가지원 보조금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1	1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촌지도자 읍면대회 행사지원 보조금	농촌지도자예천군 농촌지도자연합	10	10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행사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2	2
2014 우리음식 및 생활문화 전시체험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외 1	20	20
2014년 경상북도농촌지도자대회 행사지원사업 보조금	예천군농촌 지도자연합회	7	7
농업기술길잡이 표준영농교본 보급 보조금	예천군농촌 지도자연합회	15	15
어린이 농촌체험 활동지원 완료급 지급	물내실농장 외 1	15	15
4-H본부 운영 지원 (우수 4-H학생회원 장학금 지급)	예천군 4-H본부	1	1
2014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12	12
2014 각종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활동비 보조금 교부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12	12
2014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보조금 교부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14	14
2014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보조금 교부(1~6월)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49	49
2014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보조금 교부(1월~6월)	예천군생활 체육회	61	61
2014 제20회 예천군민 민속놀이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10	10
2014 각종육상경기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체육회	25	25
여자복싱 세계 슈퍼2체급 타이틀매치 개최 보조금 교부	예천인터넷뉴스	80	80
육상 꿈나무선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육상 경기연맹	11	11
예천군체육회 간사 급여 보조금 교부	예천군체육회	12	12
예천군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및 활동비 보조금 교부	예천군체육회	24	24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꿈나무 육성 지도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체육회	29	29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체육회	20	20
양궁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보조금 지급	경북양궁협회	15	15
학교양궁 육성지원 보조금 지급	경북양궁협회	50	50
2014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보조금 교부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24	24
제41회 한국중고양궁연맹회장기 전국남여 양궁대회 개최 보조금 지급	한국중고 양궁연맹	50	50
각종양궁대회 개최지원 보조금 지급	경북양궁협회	30	30
제11회 경상북도지사기 전국 초중학교 양궁대회 보조금 지급	경북양궁협회	70	70
2014 경북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보조금 지급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30	30
각종 양궁대회 봉사지원 보조금 지급	예천양사모	5	5
도민체전 학교체육 강화 및 종목별 훈련비 지원사업 보조금	예천군체육회	15	15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예천군체육회	150	150
2014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10	10
제18회 국민생활체육 예천군배드민턴 연합회 장기대회 보조금	예천군배드민턴 연합회	1	1
2014 읍면순회 생활체육 친선게이트볼대회 개최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12	12
각종 궁도대회 출전경비 및 궁도교실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무학정	6	6
스포츠이용권 수강료(2월분)	신한카드(주)	3	3
2014 경상북도 소년체육대회 보조금	경북육상 경기연맹	20	20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보조금 교부(7~12월)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	49	49
2014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보조금 교부(7월~12월)	예천군생활체육회	61	61
제43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대회 개최 보조금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150	150
2014 군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보조금	(주)예천신문사	10	10
2014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	45	45
제18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보조금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50	50
2014 연합회장기게이트볼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보조금	예천군게이트볼연합회	8	8
제16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예천군장애인협회	7	7
스포츠이용권 수강료(3월분)	신한카드(주)	3	3
2014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	예천군그라운드골프연합회	3	3
스포츠이용권 수강료(4월분)	신한카드(주)	3	3
2014 제9회 예천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개최 보조금	예천군생활체육회	5	5
스포츠이용권 수강료(5월분)	신한카드(주)	3	3
2014 각종육상경기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체육회	25	25
예천군수배 중부내륙 남여 궁도대회 개최 보조금	무학정	20	20
스포츠이용권 수강료(6월분)	신한카드(주)	3	3
스포츠이용권 수강료(7월분)	신한카드(주)	3	3
2014. 제1회 예천군수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	5	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68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 개최 보조금	한국대학육상 경기연맹	45	45
2014 전국 스카이다이빙 페스티벌 개최 보조금	(재)예천천문 우주센터	30	3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회	2	2
2014 어르신지도자 교통비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2	2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강료(8월분)	신한카드(주)	1	1
2014 경북리그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3	3
2014 제4회 예천군수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5	5
2014 제18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에어로빅스대회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회	20	20
2014 제3회 예천군태권도 연합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10	10
2014 제17회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2	2
2014 제6회 예천군수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5	5
2014 제1회 예천군수기 생활체육 배구대회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5	5
제12회 예천군탁구협회장배 군민 탁구대회 보조금	예천군 탁구협회	2	2
2014 어르신지도자 교통비 보조금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0	0
2014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	예천군 생활체육회	-3	-3
2014 경북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보조금	예천군 생활체육회	-2	-2
2014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보조금 교부(7~12월)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26	-26

❖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072	1,072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1월~12월	예천문화원	20	20
경북사과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월	(주)경북매일 신문	25	25
예천사과 해외판촉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월	대구경북농협 농협예천지점	20	20
2014년 체험경북가족여행사업 보조금 교부	5월~9월	경상북도 관광공사	10	10
2014 대국국제식품산업전 참가비(부스료) 지급	6월	(주)엑스코	3	3
제3회 예천용궁순대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월	예천용궁순대 축제추진위원회	100	100
2014 예천은붕어잡이 체험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월	예천청년 회의소	70	70
2014 행복나눔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보조금 교부	8월~10월	한국사진작가 협회예천군지부	8	8
예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9월	예천군의용소 방대연합회	10	10
제18회 솔개뜰 어울마당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9월	경북도립대학 교 총학생회	2	2
예천군이장연합회 내고장바로알기 워크숍 보조금 교부	9월	예천군이장연 합회	25	25
2014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대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예천농산물축제 추진위원회	285	285
제9회 회룡포달빛축제 개최 보조금 교부	10월	회룡포사랑회	8	8
제56회 예천군민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10월	예천군체육회	150	150
2014년 어르신 건강축제 보조금 교부	10월	예천군생활체 육협의회	65	65
세계활축제 뷰티페스티벌 행사 보조금 교부	10월	(사)대한미용사회 경상북도지회	10	10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월	예천축협	1	1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4 예천참우축제 행사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예천참우축제 추진위원회	60	60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월	예천축협	9	9
예천세계활축제 개막식 출향인, 자매자치단체 초청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예천농산물축제 추진위원회	17	17
2014년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대축제 도시민 초청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예천농산물축제 추진위원회	8	8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예천읍체육회	20	2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용문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상리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하리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감천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보문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호명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유천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용궁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개포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지보면체육회	10	10
2014년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지급	10월	풍양면체육회	10	10
한자녀 더갓기 운동사업 보조금 교부	11월	한자녀더갓기운동 예천군협의회	10	10
전통시장 상인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1월	계명마케팅 연구소(주)	4	4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	12월	(주)글로벌아이	3	3
2015년 봉덕산 해맞이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13월	예천청년 회의소	20	20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u>시·도는 회계년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u>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u>회계년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년도 시작 10일 전까지</u>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u>3일 이내</u>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u>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u>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u>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년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년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잔당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0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년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색 인

- 가용자원 (可用財源)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 결산 (決算)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공유재산 (公有財産)
- 국고보조 (國庫補助)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 국세 (國稅)
- 금고 (金庫)
- 기금 (基金)
- 기본경비 (基本經費)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 목적세 (目的稅)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 보증채무부담행위 (保證債務負擔行爲)
- 보통세 (普通稅)
- 부담금 (負擔金)
- 부채 (負債)
- 불용액 (不用額)

- 비용 (費用)
- 사고이월 (事故移越)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 수익 (收益)
-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세외수입 (稅外收入)
- 세입 (歲入)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 세출 (歲出)
- 수의계약 (隨意契約)
- 순계예산 (純計豫算)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 예비비 (豫備費)
- 예산 (豫算, budget)
- 예산과목 (豫算科目)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 인건비 (人件費)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 의존수입 (依存收入)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 일반회계 (一般會計)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 잉여금 (剩餘金)
- 자본지출 (資本支出)
- 자산 (資產)
- 자체수입 (自體收入)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 재정보전금 (財政補填金)
- 재정분석 (財政分析)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 재정진단 (財政診斷)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 지방세 (地方稅)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 채권 (債權)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 총계예산 (總計豫算)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 출연금 (出捐金)
- 출자금 (出資金)
- 최저임수입보장(MRG)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 특별회계 (特別會計)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 회계 (會計)
- 회계년도 (會計年度)
-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년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이는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에 의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년도 전체적으로 불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 (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 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 (歲入)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용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 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歲出)

한 회계년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 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년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豫算, 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년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 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 (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년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년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 시한인 회계년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년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 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년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보전금 (財政補填金)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text{재정자주도}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ext{여기서, 자주재원} = \text{지방교부세} + \text{재정보전금} + \text{조정교부금}$$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가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4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의장·부의장	의 원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2,500 × 인원	1,800 × 정원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 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채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text{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times 100$$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년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익년도 2월말까지('15회계년도부터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 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 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 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년도 (會計年度)

회계년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년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년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년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년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년도 지출이 있음